

2017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PART. 1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수입규제 조치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우리 경제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무역규모도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하여 전 세계 수출 6위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발전시켜 2018년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4강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대일로”, “신형대국관계”를 기치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이나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면서 ASEAN과 인도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이 Pivot to Asia 전략에서 한발 물러선 사이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냉철히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新남방·新북방정책 등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과 산업·에너지·통상을 연계한 통상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 한·미 FTA 개정협상,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도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무역장벽보고서(제1권)와 분야별·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된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해외현지 공간으로부터 수집된 전 세계 94개국 통상제도와 동향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각국의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본서를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과 최신 정보 공유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 윤 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Contents

○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중동

• 미국	2
• 유럽연합(EU)	14
• 일본	27
• 중국	34
• 인도네시아	60
• 베트남	72
• 말레이시아	94
• 태국	103
• 인도	111
• 러시아	123
• 호주	131
• 브라질	136
• 캐나다	147

1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미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미국은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상품 교역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면서 제2대~제4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2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2%(1,097억 달러)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상품 수출입은 각각 664.6억 달러와 432.2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23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¹⁾은 자동차(23.5%), 무선통신기기(11.3%), 자동차부품(10.2%), 반도체(5.0%), 석유제품(3.6%) 등이며, 대미국 주요 수입품목은 항공기및부품(8.8%), 반도체(8.5%), 반도체제조용장비(6.3%), 자동차(4.0%), 육류(3.4%) 등이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무역은 한·미 FTA 발효 전 5년(2007~2011년) 대비 발효 후 5년(2012~2016년) 동안 수출이 9.0% 증가하고 수입이 17.3%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수출입은 각각 142.7억 달러와 285.5억 달러이며, 서비스 무역수지는 142.8억 달러 적자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주요 수출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41.7%), 운송(26.1%), 여행(9.5%), 저작권사용료(5.9%)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30.0%), 여행(24.8%), 저작권사용료(19.0%), 운송(18.1%) 등이다.

1962~2017년 9월 미국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기준) 누적금액은 302.3억

1) 본 보고서에서 주요 수출입 품목은 모두 MTI 3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4%(EU와 일본 다음의 제3위 투자국)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미국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는 총 79.5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비즈니스서비스업(31.6%), 운송용기계(20.5%), 금융·보험(14.0%), 도·소매(9.3%), 화공(7.3%) 등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룬다. 한편 1968~2017년 9월 한국의 대미국 투자(투자금액 기준) 누적금액은 911.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23.6%(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한국의 대미국 투자(투자금액 기준)는 총 446.2억 달러가 시행되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7.5%), 부동산업 및 임대업(22.4%), 금융 및 보험업(18.2%), 제조업(8.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0%) 등 서비스업 중심이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된 후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고,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12월 현재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마친 상태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EPS) 시험기준 개정

미국이 2012년 4월 WTO에 통보한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른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는 외부전원공급장치(EPS: External Power Supplies) 및 배터리 충전기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휴대폰, 노트북, MP3 플레이어, 장난감, 진공청소기, 면도기 등 일반·산업·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EPS 및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외장형 전원장치의 최저효율, 무부하 상태의 대기전력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충전기 종류별 최대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부(DOE)가 고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에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11월 WTO TBT 위원회 개최 당시 양자협의를 통해 EU의 규제와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star) 보다 과도한 동작모드 시 최저 에너지 효율, 무부하 최대전력 소모기준을 EU 혹은 에너지스타 기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배터리 충전기 규정의 대상제품 및 에너지소비 계산식도 동일하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3년 10월 양자회의에서 에너지스타와 환경보호국(EPA)의 에너지 효율제도간의 불일치는 각 규제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시험방법을 수정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으로서 향후 규제 당국간의 조율을 통해 부합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6년 8월 12일 동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2018년 6월 13일부터 기업의 규제준수가 의무화된다. 현재까지는 동 규정에 대해 기업 애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동 기준의 시행 이후에도 무역장벽 요소가 존재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LED 램프 성능 규제

2012년 4월 미국은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실시하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제도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FTC의 라벨링 규정은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강제사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WTO TBT 위원회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램프 수명 표기방법 및 색온도 표시값을 미국의 에너지스타 표준과 일치시켜

줄 것과 규제 시행시기를 동 규정 발표 후 1년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총 2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시험 샘플 장착 방법을 국제표준과 부합화시켰으며,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제품의 파생모델 수명시험을 면제하고, 시험시간 6배 수명 표기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수명시간 시험방법은 기존 에너지스타 규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 규제최종안 공표 전에 수명시험이 가능하므로, 시행시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어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차질이 없게 되었다.

낙뢰보호시스템(LPS) 표준

미국화재방지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낙뢰보호시스템(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 표준(NFPA 780)이 국제표준과 달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NFPA 780은 민간 협회인 미국화재방지협회가 재래식 피뢰침(Franklin Rod)에 기반한 LPS를 염두에 두고 제정한 표준이며,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 등에 인용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다만, 국제표준 하에서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LPS가 NFPA 780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USTR과 미국화재방지협회에 LPS 국제표준을 인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화재방지협회는 2020년 개정되는 NFPA780에 우리기업의 낙뢰보호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포함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美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본격 시행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11년 통과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FSMA 이행을 위하여 제안된 총 7개의 새로운 하위규칙을 2016년 5월 최종 마무리 하였다. 7개 최종 규정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 관리,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관리,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의 승인, 농산물 안전 기준,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및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 최종 규칙이다.

FSMA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이 최종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함을 검증하여야 하며, FDA는 식품 및 사료를 제조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할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장도 농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FDA는 FSMA에 따라 미국의 식품안전체계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 까지 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FSMA를 적용할 예정이며, FSMA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및 식품안전 훈련, 교육, 강좌, 지원활동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표 한 바 있어 향후 대미국 식품 수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규제

29종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 적용 방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5년 12월 4일 기존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 대상이던 29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중요신규 사용규칙(SNURs: Significant New Use Rules)」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SNURs에 따라 중요신규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및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활동 시작 전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신고해야 한다. EPA는 사전신고를 통해 의도된 사용목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²⁾ 동 규정은 2016년 2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미국은 1995년 1월 1일~2016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위는 인도) 반덤핑 조사 개시(606건) 및 반덤핑 조치 부과(395건)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이어 일본과 공동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국, 일본,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7년 12월 현재 총 16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6건은 조사 중이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 중 대부분이 철강금속제품 군에 속한 제품이다. 미국 철강업체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 오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2017년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철강금속제품이 2건(탄소합금강선재, 냉간압연 강관), 섬유제품 2건(저융점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기계 1건(원추 롤러 베어링), 화학공업제품이 1건(PET 레진)이다.

2) 구체적 적용대상 물질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지원시스템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은 높은 편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철강업체가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사용 권한 강화

2016년에는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제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판정에 특정시장상황(PMS) 적용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이 AFA 사용 권한을 강화한 것 외에도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의 제504조(Sec. 504)상 특정시장상황³⁾(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따라 PMS를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⁴⁾ 이에 따라 미국은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피제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에 대해 특수시장상황, 특별시장상황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4) TPEA 제504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 산정시 비교시장에 PMS가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제가격 대신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효영(2017),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수입규제 동향과 시사점,” pp. 17-18; 법무법인 광장(2017),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연구,” pp. 74-77 참고.

미국의 TPEA가 통과된 이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PMS를 적용하였다. 2016년 10월 OCTG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 PMS의 혐의⁵⁾를 개별적으로(individually) 검토한 결과 제조사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는 종합적으로(collectively) 검토한 결과 PMS가 존재한다고 결정하고 예비판정보다 더 높은 덤핑 마진율을 적용하였다.⁶⁾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4년 7월 11일 미국 상무부(DOC)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⁷⁾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시에는 우리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⁸⁾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률이 산정되었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을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5) 제조사는 특정시장상황의 근거로 첫째, 저가의 중국산 열연(HRC)이 한국에 공급되어 OCTG의 원자재인 열연의 가격 왜곡되었고, 둘째, 한국 정부의 국내 열연제품에 대한 의도적인 보조금 지급이 있으며, 셋째, 한국 내 열연 생산자와 OCTG 생산자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로 열연의 가격이 왜곡되었으며, 넷째, 한국정부의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한전의 저렴한 전기요금의 영향을 들었다. 이효영(2017), p. 17; 법무법인 광장(2017), pp. 77-78 참고.

6) 이효영(2017), p. 17; 외교부(2017),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p. 27 참고.

7)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8)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시에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인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유정용 강관 사안은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상황이며, 2015년 7월 1일 한미 양국간 패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절차가 진행중이다.

유정용 강관 분쟁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세탁기 관련 분쟁이 있다. 세탁기 사건의 경우 미국이 표적덤핑⁹⁾ 조사에서 제로잉¹⁰⁾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WTO 분쟁패널은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 기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 왔다. 그러나 세탁기 사건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함으로써 분쟁이 개시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해도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전해지며 2016년 3월 경 패널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상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12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월풀(Whirlpool)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9)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산출되게 된다.

상계관세

미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6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195건) 상계관세를 부과한(111건) 나라이다. 2위인 EU의 조사개시 건수(77건) 및 부과건수(37건)와 비교해도 미국은 모두 2배가 넘는다. 최근 미국은 상계관세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현재 미국으로부터 세로절단후판, 세탁기, 스테인리스냉연강판코일 등 총 7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이래로 내식강, 열연강판, 냉연강판, 탄소합금후판 등 4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최종판정이 있었다. 미국 철강업계의 조사신청에 따라 미국 조사당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미미한 것이어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최근의 것만 해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이다.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라는 이유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도 상당하다는 사실은 미국 철강업계가 상계관세조사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2017년 5월 31일 미국 월풀사(Whirlpool Corporation)가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미 상무부에 세이프가드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6월 5일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조사결과 2017년 10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긍정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 상무부는 2017년 11월 21일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의 90%가 한국산으로 미국의 동 권고안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권고

안의 주요 내용은 3년간 120만대 이상 수입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미국 세탁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미국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17%, LG전자 13%)의 세탁기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최종 결정(2018년 1월 예정)이 남은 상황이지만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긍정판정을 내린 상태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통관

과도한 안보검사에 따른 통관절차 지연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국내 업체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과거 AMF (Advanced Manifest Service), 현재는 '10+2 Rule'로 불리는 수입자 안보신고(ISF: Importer Security Filling)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한 통관절차를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NII(VACIS)¹¹⁾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상 4~5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400~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세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검사장치의 운영업자가 세관과 협의한 비용요율표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런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적으로 완전개방검사(Full Scanning)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5~7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1,000달러의

11)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VACIS)은 미국의 수입물품 검사 운영 방식 중 하나로, 항만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면서 검사하는 유형이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완전개방 검사 후 다시 적입할 때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책임소재 입증에 불분명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미 한·미 컨테이너안전협정(CSI)에 따른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재검사 하는 등 과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관 집하장 설치 및 검사인원 부족 등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EU는 2016년 현재 전세계 GDP의 21.8%인 16.4조 달러를 차지(IMF 통계 기준)하고 있는 세계 2위의 경제주체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¹²⁾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466.1억 달러와 519.0억 달러로, 상품 무역수지는 5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11.8%), 자동차(11.8%), 자동차부품(9.5%), 합성수지(4.6%), 철강판(3.9%)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14.6%), 농약및의약품(5.6%), 반도체제조용장비(4.1%), 원동기및펌프(3.5%), 측정제어분석기(3.5%) 등이다. 한·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EU 재정위기, 유로화 약세,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등에 따라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측간 상품 무역액은 2015년 1,05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유가 하락 및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985억 달러로 다소 축소되었다.

1962~2017년 9월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 EU의 대한국 투자는 758.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금액(1,844.6억 달러)에서 41.1%를 차지하는 제1위 투자국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EU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는 총 196.1억 달러(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34.0%를 차지)에 이르고 있고, 몰타(28.3%), 네덜란드(26.8%), 룩셈부르크(16.1%), 영국(7.9%), 독일(5.9%)등이 주요 투자국이며, 주요

12)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한다.

투자업종은 금융·보험(28.6%), 화공(17.2%), 비즈니스서비스업(15.8%), 비금속광물(12.3%), 도·소매(7.3%) 등이다. 한편 1968~2017년 9월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503.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누적금액에서 13.1%를 차지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대EU 투자는 2009년 51억 달러, 2010년 75억 달러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가 FTA 발효 이후 2016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7년에는 9월까지 누적 금액이 43.8억 달러로 한국의 대EU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한국의 대EU 투자(투자금액)는 총 167.6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대상국은 룩셈부르크(22.7%), 네덜란드(19.9%), 영국(17.5%), 아일랜드(10.7%), 프랑스(7.0%) 등이고, 주요 투자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23.3%), 광업(18.0%), 금융 및 보험업(15.8%), 제조업(14.7%), 도매 및 소매업(12.1%) 등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EU FTA는 2009년 7월 타결되고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이후 만 4년 5개월 간 잠정 적용되었으나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하게 되었다. 즉, EU 회원국들의 비준 등 EU측 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 집행 일부 조항(상표권·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까지 효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진 법률시장 개방이 완료되어, EU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법률법인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V·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준

EU는 최근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TV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술규정 2차 개정 후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동 규정의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차 개정안은 TV 화면이 커질수록 더 큰 폭으로 전력소비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 동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5년 9월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와 EU측과의 정부간 양자협의 개최 시 대형 TV에 대한 소비전력기준의 완화 및 UHD TV에 대한 별도 기준 수립을 요청한 끝에 EU측은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여 다소 전향적인 2차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안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기존에 비해 동작모드 전력소비 값의 기준이 여전히 강화되었고, 특히 85인치 이상 TV에 대해서는 그 기준값을 만족하기가 어려워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가 예상된다. 현재 85인치 미만 TV는 해외 경쟁업체들도 많이 생산하고 있으나, 85인치 이상 TV는 우리 기업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한편 TV 인치 크기에 관계없이 대기모드의 소비전력 기준값도 기존 0.5W 이하에서 0.3W 이하로 강화되었고, HiNA 기능이 있을 때의 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값도 6W 이하로 강화되어 기업의 애로가 예상되었다.

2016년 12월 EU 집행위는 WTO에 개정 최종안을 통보했는 바, 3단계(2022년 시행예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리측 의견을 일부 수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1단계 소비전력기준 강화(11~41%), 대기 전력기준 강화(0.5W→0.3W), 규제대상을 TV, TV 수신용 모니터에서 TV, 컴퓨터 모니터, 1dm²(약 5인치) 이상 모니터 등으로 확대, 재활용 요건 추가(용접 금지 등), 과도한 정보보관 요구(15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정부는 기업의견 수렴을 통해 동 규제의 완화를 위해 EU와의 양자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

전자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2005년부터 25개 회원국의 국내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 EU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안)(「WEEE Directive 2012/19/EC」)을 마련하고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02년 법안에서는 개인당 연간 최소 4kg 중량의 폐기물 회수율 산정 방식이었으나, 2009년 개정안은 2016년까지 EU 전체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최소 85%를 재활용할 것을 명시하되, 폐기물 회수율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7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국가별로 연간 총 시장출시 품목의 총량기준 45% 감축 혹은 개인별 최소 4kg 씩 감축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는 동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05년 이후 출시제품에 대해서는 관련제품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게 제품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무료로 동 제품의 폐기물 수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¹³⁾

한편, EU는 2003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및 PBB, PBDE 등 방염제 같은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RoHS Directive 2002/95/EC」)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13년 1월 EU는 동 지침의 그간 시행효과의 점검을 통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안)(「RoHS Directive 2011/65/EU」)을 시행 중이다. 동 개정지침은 기존 EEE 10가지 제품군에서 제외되었던 의료장비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가 포함되었고 10개 제품군 외 전기·전자제품도 포함되었다. 동 지침의 규제 대상자는 최종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 부품 및 중간조립업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13)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참고

<https://www.compass.or.kr/known.do?pageNum=1&subNum=1&command=view&idx=6F9B8A6A-7841-48DF-BDA1-20F225D5DA31> (2016.1.14 방문)

전기전자제품 관련 EU의 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은 EU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의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EU환경규제 관련 R&D 지원 등 관련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에코라벨 기준 강화

1992년 처음 도입된 EU의 친환경 인증인 에코라벨(Ecolabel)은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정 기준 하에 규정된 한도 허용수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에코라벨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증명일 뿐만 아니라 제도시 안전이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으로, 화장품에서 청소용 세제나 염료, 캠핑장,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기존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인 「2009/563/EG」보다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규정인 「EU 2016/1349」를 2016년 8월에 공표함에 따라 신발, 가구,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정에서는 신발의 경우 PVC로부터 생산되는 플라스틱 성분 규제 강화와 생산과정에서 국제 근로기준 및 근로조건 상응여부를 중점으로 포함하였고, 가구의 경우 위해요소의 사용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컴퓨터의 경우 에너지효율성 기준 강화, 개별 부품의 재활용 가능 여부,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능력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EU에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기준 강화와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는 차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발 및 컴퓨터 등의 제조사는 EU 에코라벨 인증을 위해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향상시키고, 생산 시 개별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코라벨의 인증획득은 EU 시장 진입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품 생산 및 소재, 공정상 친환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28개 EU 회원국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U는 2008년에 2012년부터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항공부분에 탄소배출거래제도(ET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거센 반대¹⁴⁾에 부딪혀 1년간 ETS 도입을 유예한 바 있다. 2013년 10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선의 EU 역내(EEA) 항공 배출량을 포함하는 ETS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국제항공에서의 탄소배출감축 계획안을 마련 중임을 고려하여 EU-ETS 시행을 잠정 연기하되, ICAO의 항공탄소감축 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으로 역내 국제항공부분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 말까지 유보(stop-the-clock) 되었다.

그 후 2016년 ICAO 총회에서는 글로벌시장기반조치(GMBM)를 2020년부터는 자발적으로, 202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ICAO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와는 별도로 EU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 ETS를 실시할

14) 2012.11월 EU가 ETS 도입을 시도할 당시 인도, 미국, 중국 등의 심한 반대가 있었다. 당시 인도는 인도영공을 폐쇄한다며 반박하였고,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사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항공기 55대의 주문을 동결하였다.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EU와 역내공항과 역외공항간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유보를 2017년 이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Directive 94/62/EC」는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서,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부속서 I)를 담고 있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업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은 2004년 2월 「Directive 2004/12/EC」으로 개정되었는데, 중량 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국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가 강화되었다.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되었으며,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 및 포장재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2014년 10월부터,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플라스틱 봉투에 부담금을 부과(소매점에서

유상제공)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 집행위는 2030년까지 포장폐기물의 75%를 재활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은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저감정책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체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은함유제품 관리 강화

EU는 치과용 amalgam,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연간 약 3,000톤)를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년 현재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2008」)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수은 협약(미나마타 협약)이 2013년 10월 채택되었으며, EU 집행위는 2017년 5월 동 협약을 비준했다. EU는 국제 수은협약의 이행을 위해 기존 수은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며 EU 역내에서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31일 부터, 배터리·축전지,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수입도 금지되는데 폐기물로서의 처분목적 이외의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EU내 수입이 금지되고 처분 목적을 위한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가용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한편 산업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사용도 금지되는데, 촉매제(catalyst) 생산공정에서의 사용과 폴리우레탄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극(electrod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금지된다. 또한 신규 수은함유 제품(new mercury-added products)의 생산과 출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화학물질관리

EU는 생산자 책임원칙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REACH 시행 이후 1차(2010년 11월) 및 2차(2013년 5월)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 5월말까지 1톤 이상 100톤 미만 소량 화학물질이 등록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유럽 시장내 화학물질에 대한 수요변화에 따라 신규물질에 대한 수입 규모와 기업이 변화한 만큼 등록초기 톤수나 대상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SVHC 후보 물질 역시 2천여 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업계의 관심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EU와 회원국들은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유럽 화학물질청(ECHA)을 통해 2017년 5월에 나노물질관측소(EU-ON)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나노물질 현황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EU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 조치

EU의 수입규제 현황

EU는 2017.9월 기준 총 15개국에 대해 107건(반덤핑조치 94건, 상계조치 13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중이며, 그 중 3건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치이다. 특히 EU는 1995~2016년 간 WTO 회원국 중 인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 부과국으로서, 동 기간중 조사를 개시한 총 483건 중 314건에 대해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 결정을 내렸다.

1995년 이래 EU의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40%)과 화학제품(20%)에 반덤핑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현재 EU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중인 반덤핑 관세 조치 3건 중 2건이 철강제품(방향성 전기강판, 철강 제관연결구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 글로벌 철강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EU, 미국 등 철강 수입 규모가 큰 주요국들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 되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하여 특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측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16년 11월 말 현재,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4건이며, 금년 2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7년 5월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 조사의 경우, 2016년 11월 발표된 예비 조사 결과, 12.1%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5월에 예비판정이, 2017년 10월에 최종판정이 있을 예정이다.

(1)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2016년 2월 18일, EU 집행위는 유럽 감열지 협회의 제소에 따라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집행위는 2016년 11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12.1%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최종 판정에서 EU 집행위는 덤핑마진 계산 방식 오류 등에 대한 우리 기업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 반덤핑 관세를 증가세 형태로 부과하지 않고 톤당 104.46유로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증가세로 환산시 약 8.5%의 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과 유사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와 같은 반덤핑 조치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확정 반덤핑 조치는 부과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종료되지만 종료 재심(expiry review)을 통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5년의 조치 부과기간 중이라도 동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해 관계자의 요청 또는 집행위 및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중간 재심(interim review)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방향성 전기강판(GOES)

EU 철강업계는 2014년 6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제품을 반덤핑으로 EU 집행위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EU 집행위는 2014년 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제품에 대해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첫 사례이다.

2015년 10월 최종 판정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치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에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철강제 관련결구류

EU는 2002년 8월 처음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 집행위는 2017년 7월4일자 관보를 통해 별도로 종료재심 신청이 있지 않은 경우 2018년 1월 29일자로 동 조치가 만료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EU의 동 제품에 대한 15년 이상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조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조치 종료를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타

EU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

EU 집행위는 철강분야 글로벌 생산설비 과잉 및 이로 인한 중국산을 비롯한 철강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구제 제도를 현대화하고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0월 간 EU집행위가 신규로 개시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12건 중

10건이 철강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동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EU 내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prior Union surveillance of imports of certain iron and steel products) 시행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등 유럽 경제지역을 제외한 비EU 국가가 EU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U 수입업체들이 EU 회원국 기관에 수입물량 및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한 정보가 실제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U 집행위는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가 2020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국제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압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제품 교역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철강 수입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로 무역구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밝힌 바와 같이 동 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무역구제조치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토대로 향후 EU 철강 수입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은 물론 국가별, 제품별 수입동향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EU 집행위의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6월 EU 집행위는 역내 철강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NO.2017/1092)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HS 7318(스크루와 볼트 등) 품목은 0.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였고, HS 7303(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 품목은 삭제되었으며, HS 7229(기타 합금강의 선) 품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특히 신규로 포함된 HS 7229 품목은 2016년 EU 수입에서 대한민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4%(제2위)에 이르고 있어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동 제도의 주된 관리 대상 제품은 중국산 철강 제품이기에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철강제품의 EU 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EU와의 양자 회의시 동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일 양국간 상품 무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330배로 성장하며 상호간 제3위 교역파트너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80억 달러를 기록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들어 5년 만에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244억 달러와 475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적자이다. 품목별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9.5%), 철강판(6.4%), 반도체(6.0%), 금은빛백금(4.2%), 자동차부품(3.8%)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8.6%), 반도체제조용장비(5.3%), 플라스틱제품(4.8%), 철강판(4.7%), 기초유분(3.4%) 등으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높다. 한편 BOP 기준 양국간 서비스 무역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2012년 130.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78.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대일본 수입은 2013년 99.7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6년 86.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4년까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일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기준)는 1962~2017년 9월 누적금액이 314.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금액(1,844.6억 달러)에서 17.0%(제2위 투자국)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은 총 81.3억 달러(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14.1%를 차지)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비즈니스서비스업(24.7%), 화공(14.3%), 전기·전자(12.7%), 금융·보험(9.6%), 비금속광물(9.2%) 등이다. 한국의 대일본 투자(투자금액 기준)는

1968~2017년 9월 누적금액이 84.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한국의 대일본 주요 투자업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28.4%), 도매·소매업(17.1%), 제조업(16.8%), 부동산업·임대업(15.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9.2%) 등이다.

한·일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제6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으나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중·일 FTA,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 對한국 쿼터(김) ②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글로벌 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구분된다. 대한국 국별 쿼터 대상 수산물 9개 품목(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으로서 △수요자 할당, △상사 할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이 있다. 일본은 전체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 제한을 두고 있으며, 쿼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2001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2015년 5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6년 8월부터 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2017년 3월에는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12월 예비판정이 있었다.

일본의 수산화칼륨(KHS 2815.20)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일본 칼리전해 공업회가 2015년 2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 조사가 개시되었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조사 전인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 중국산은 4.2%로 한국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9일 최종판정 결과에 따른 49.5%의 반덤핑관세(중국산의 반덤핑 관세는 73.7%)가 5년 동안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3월 31일 일본은 유체를 필요한 장소로 운반하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구류(KHS 7307.93)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했으며, 2017년 12월 8일 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태광 43.21%, 기타 한국 업체 73.51%, 중국 업체 60.84%)이 내려진 상태이다. 이는 일본밴드주식회사, 주식회사벤칸기공, 후루바야시공업 주식회사 등 3개사가 2015년 10월~2016년 9월 사이 한국산 및 중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되어 일본산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2016년 기준 한국산 제품은 일본 수입시장의 16.49%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는 국가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는 분산조달방식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 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 모든 조달과정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국공급자들은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또한 일본은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급자가 일본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언어, 정보 습득,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어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산조달방식 및 독특한 조달관행은 일본의 조달시장에 외국공급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수립 · 공고

일본은 2017년 3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생식용 피조개 및 키조개,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김치, 토마토·미니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청고추 및 그 가공품, 참외 및 그 가공품이다.

농약검사 관련,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경우,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계속 운영하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적 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일본 검역당국은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으로 일본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병해충은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하여, 발견되어도 별도 검역 조치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1998년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53종을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2017년 10월 현재까지 43종을 인정하였지만 10종은 아직 미지정한 상태이다.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으로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청 및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제조되는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8월 31일까지는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2개 식품군과 4개 품목(장어 가공품, 가쓰오부시, 농산물 절임, 야채냉동식품)이었으나, 일본정부는 TPP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22년 3월 31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표시대상 원료는 원료 함량이 가장 많은 원재료에 대하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 안전 인증기준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규격·인증체제를 구축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도도부현) GAP, 민간단체 GAP, 농협 GAP 등 다양한 GAP 인증제도를 운용중이나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내보급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림수산성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일정 수준 이상의 GAP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Global GAP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거래에도 통용되는 GAP에 관한 규격·인증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인증기준의 강화는 일본 소비시장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HACCP, FSSC22000 등 인증취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 식품관련 인증 및 위생에 대한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기타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경영사항 심사시 평가가산점 인정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건설업법」에 따르면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허가 업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책임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 합계 3천만 엔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있어서도 감리기술자 강습 수강자에 대한 가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강습은 불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활어 운반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 운반차는 일본 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어운반 차량 등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활어운반 차량 일시운행 승인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본 내 근거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 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전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안전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널 입항 약 7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 선사의 터미널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중국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품 무역액에서 23.4%를 차지(수출 25.1%, 수입 21.4%)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중국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1,244.3억 달러와 869.8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37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는 2008년부터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감소, 이후 2016년 11월부터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19.5%), 평판디스플레이모니터(14.9%), 무선통신기기(5.1%), 합성수지(4.9%), 석유화학중간원료(4.7%) 등이며,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13.0%), 무선통신기기(7.7%), 컴퓨터(6.7%), 철강판(4.6%), 산업용전기기기(4.0%) 등이다.

1962~2017년 9월 중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52.2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중국의 대한국 투자금액(도착금액 기준)은 29.3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41.0%), 부동산·임대(21.9%), 도·소매(8.6%), 비즈니스서비스업(6.7%), 기계·장비(6.6%) 등이다. 한편 1968~2017년 9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582.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1%에 이른다. 한국의 대중국 주요 투자 업종(1968~2017년 9월 누적금액, 투자금액 기준)은 제조업(76.7%)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25.7%)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1.2%),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5.1%), 1차금속 제조업(4.2%),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4.2%)에

투자가 많이 시행되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업(6.8%), 도매·소매업(5.7%), 부동산업·임대업(3.0%)이 주요 투자업종이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2017년 12월 14일 북경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MOU를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FTA, RCEP 등의 지역무역협정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와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2016년 기준 47종 상품 537개 품목을 자동수입허가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제도이다. 그러나 수입에 필요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규상 검열기준 30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는 한 달 내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지방정부에 하달되는 데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통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

중국의 자의적 세율체계 운영으로 인해 외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

및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HDMI 모니터¹⁵⁾이다. WCO(세계관세기구)는 2014년 9월 제54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하였다. 중국측은 WCO의 분류의견을 받아들여 HDMI 모니터를 HS8528.59에서 HS8528.52로 6단위 세번을 변경하였다. 단 중국은 국내법으로 운영 가능한 HS 6단위 이후의 HS코드 및 세율 체계를 자의적으로 마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세율(30%)의 부과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응은 WCO의 분류의견을 일견 반영한 듯 보이나, 국내법으로 세율구조를 변경하여 과거와 동일한 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WCO의 분류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HDMI 모니터 사례 외에도 여러 품목에서 자의적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흑양파즙 품목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이를 야채주스로 분류하였으나, 이후 음료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형 무한궤도차량의 부분품인 무한궤도에 대하여 자전거 체인과 동일한 HS코드로 품목을 분류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세목을 통해 세율을 통제하고 있어 세관의 품목분류 기능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육성산업을 위주로 세목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 HS코드 변경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해관(세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품목분류의 적용을 추진하는 ‘전국 해관(세관) 통관 일체화’라는 통관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세관의 선진국형 행정제도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5) HDM(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모니터는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로, 이에 대해 각국마다 ‘컴퓨터용’ 또는 ‘기타용’으로 분류하면서 품목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우리 관세청은 2010년 11월부터 이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여 왔다.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중국 통관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는 통관기간을 길게 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전 고지가 없거나 규정과 어긋난 검사, 과도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사전고지가 미흡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례로 한 업체는 규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설비를 수입하였는데 사전 상품 검험(질검중국 산하 상검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업체는 로비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면세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규정상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8년이 지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를 소급하여 검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세관별로 중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화장품 샘플 통관 애로

중국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 인증을 위한 샘플 통관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샘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량 발송이 대부분인 샘플 통관의 경우 해관에 명확한 업무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아 들어오는 샘플의 정식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서류 통과만 짧게는 2주, 길게는 두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 현지기업은 통관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컬 경쟁사의 先 시장 진입이 발생한다.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된 세관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화장품, 식품 등 전반에 걸친 샘플통관상의 애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우리나라는 중국내 총 29개 검사기관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수입 통관 시 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통관시간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애로 사항이 발생한다. 중국에 식품 수출시 통관시간 장기간 소요로 유통점 납품시 유통기한의 1/2~2/3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국외시험·검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동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삼·홍삼 통관

2012년 중국은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하던 인공 재배된 5년 이하의 인삼(제품류 포함)을 신자원식품(식품 원료)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5년근 이하 인삼은 일반식품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기존 6년근 이상 인삼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원식품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신자원식품 통관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추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기존 6년근 이상 인삼제품(보건 식품)의 등록 및 통관¹⁶⁾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제정·시행한 수입중약재에 대한 품질검사기준 중 우리나라 홍삼에 대한 품질기준인 고려홍삼질량표준의 경우 현재도 연근제한, 표면색, 함량기준 등의 항목이 불합리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관·검역과정에서도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16) 중국은 6년근 이상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CFDA의 위생허가를 요구한다. 중국에서 보건식품 등록신청을 할 때 CFDA에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안전성, 기능성 등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있어 시간 및 비용 부담이 발생된다.

과도하게 적용하여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수출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고려인삼의 제품특성에 맞지 않는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질량표준을 우리 홍삼 수출에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WT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 234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반덤핑 조사 건수 세계 7위)하였고, 총 192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반덤핑 조치 부과 건수 세계 6위)하였다.

중국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0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3건은 조사 중에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10개 품목 중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 섬유(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를 제외한 7가지 품목과 현재 조사중인 3개 품목이 모두 석유화학제품일 정도로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관세 부과는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은 PVC, 비스페놀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폴리아세탈이다. 이 중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2003년 7월 1일 반덤핑 조치가 실시된 이후로 두 번째의 일몰재심을 거쳐 13년째 반덤핑 조치가 실시 중이다.

중국은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인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 스티렌(Styrene Monomer), 니트릴 고무(Nitrile Rubber)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덤핑 관세 부과 제품 중 아크릴 섬유는 현재 중간재심 중에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정교해진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2016년 7월 방향성 전기강판의 반덤핑에 대한 판정결과가 최종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변경되는 등 판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WTO 분쟁사건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조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하여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신에너지 자동차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추천 차형목록」에 포함된 차형으로 제한되며, 동 목록은 2017년 12월 말까지 총 11차례 발표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동 목록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형을 포함시켜 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기업들은 한국산 배터리를 채용하지 않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입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증가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그 대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0년부터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철강산업 보조금

중국은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증치세(부가가치세 17%)를

부과한 후 이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시 차등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철강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 제도 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2003년 시행)과 「입찰법」(2000년 시행)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한편,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2012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조달법 실시조례」는 2014년 2월에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이다. 조달기관 또한 중앙·지방 차원의 조달집중기구, 조달대행기구 등으로 다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조달 절차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중앙정부의 집중구매목록을 제외하고는 각 조달센터, 조달대행기관, 지정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응찰시한이 WTO GPA에는 원칙적으로 조달 공고일로부터 40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20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규와

실제 이행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제10조에서는 정부 조달 시 자국산 구매의무를 명시¹⁷⁾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법규 및 정책에 ‘Buy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다른 국제규범에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FTA는 정부조달 분야를 포함¹⁸⁾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챕터가 아니라 구체적 의무 사항과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조) built-in 조항”을 경제협력챕터의 일부 분야¹⁹⁾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GPA에 가입할 때까지 당분간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일부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외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강제인증제도(CCC)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 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다.

17) 중국 「정부조달법(政府採購法)」 제10조에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8)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한·중 FTA와 중·스위스 FTA 뿐이다. 중·스위스 FTA(제13.4조)도 추후 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19) 한중 FTA 협정에서 정부조달 분야 합의 사항은 제17.13조~제17.17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CCC 인증 대상 품목은 2003년에 132개였으나 2006년에 일부 자동차부품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완구제품이, 2008년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이 포함되었다. 2013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CCC 인증 대상에서 의료기기가 제외(CFDA에서 허가심사)되었으나, 2017년 10월에는 오토바이 헬멧과 전기장판(2018년 8월 1일 시행)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유아용 매트(2018년 12월 1일 시행)가 CCC 인증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2017.12월 현재 CCC 인증 대상 품목은 20개 분야 161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²⁰⁾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는 총 6단계²¹⁾로 진행되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CCC 인증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

20) 중국의 CCC 인증 대상 제품군은 ①전선 케이블, ②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기장치, ③저압 전기 장치, ④소형 전동기, ⑤전동공구, ⑥용접기, ⑦가정용 기기, ⑧음향 영상설비, ⑨정보기술 장비, ⑩조명 전기 기기, ⑪차량 및 안전제품, ⑫차량 타이어, ⑬안전유리, ⑭농기계, ⑮전자통신 단말기, ⑯소방제품, ⑰안전 기술 예방설비, ⑱무선인터넷설비, ⑲인테리어용 제품, ⑳완구류 제품이다. 2017년 7월 28일 기준 CCC 인증 대상 품목은 총 158개 품목이며, 이후 3개 품목이 추가되어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161개 품목이다. 2017년 7월 28일 CNCA가 발표한 CCC 인증 제품 대상 목록 및 2017년 HS코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http://www.cnca.gov.cn/xxgk/ggxx/2017/201707/t20170728_54862.shtml, 첨부파일 “强制性产品认证目录产品与2017年HS编码对应表” 참고.

21)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시료 채취검사, ⑥평가 순으로 이루어 진다.

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CCC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도 대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제품포장 및 라벨 기준 변경

중국의 잦은 라벨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를 미처 준수하지 못한 국내업체의 제품이 라벨 확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업종에 걸쳐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 문제가 각 지역 출입국검험검역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일례로, 상해 상검국의 외부포장 및 라벨 규정²²⁾이 청도에서는 통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청도 내에서도 항만에 따라 비안절차가 다르다. 청도 상검국의 경우 외부포장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업무 진행이 느린 반면(1~3개월 소요), 같은 시의 황도 상검국에서는 스티커 형태 라벨²³⁾을 인정, 규격에 맞게 사전 등록하여 수입 후 제품에 부착하고 통관을 보다 수월히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약, 비누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어 라벨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어 물류·운송비용, 재고비용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IT 제품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법」(China RoHS)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China RoHS 2)을 시행하고 있다. 동 관리방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이전의 '전자정보제품'에서 중국에서 생산, 판매,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었으며, 납 및 납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6가 크롬

22) 통관 전 중국 세관의 제품심사로, 샘플(0.5kg×2개)을 보내야 하며, 통상 2~3개월의 시간과 3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23) 중국에서는 2011년 6월 이후 스티커 형식의 라벨링이 금지되었다.

화합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및 정부가 정하는 기타 유해물질이 규제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는 유해물질의 명칭, 함량, 관련 부품, 재활용 가능여부, 잘못된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인체영향, 제품의 안전한 사용기한 등을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독성화학물질 목록 지정 제도

중국 환경보호부는 162개 화학품을 「수출입제한유해화학목록」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환경등기증(유효기간 2년)과 방행단(放行單)(유효기간 6개월) 제출 시에만 물품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 환경등기증은 유해화학목록 제품에 대해 품목당 필요서류와 1만 달러를 환경보호부에 납부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중국 수입상은 수출계약서 별로 방행단(放行單)이라는 수입허가서를 추가로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방행단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의 환경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등기증 발급 및 비용 소요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주로 수입상이 부담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수출 완제품에 비의도적인 미량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불순물 최대 허용기준²⁴⁾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순물 미량 검출시 범규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TBT 위원회 미통보로 인한 TBT 협정 제2조의 위반 가능성과 중국제품과의 차별로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EU의 REACH 제도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가 명시적으로 법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24) EU-REACH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을 0.1%까지 허용하며, 우리나라의 화평법도 불순물 최대허용치를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발급하는 수입 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CFDA의 수입의약품 등록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의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10월 중국 CFDA는 신약과 의료기기 시판 승인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한 임상 시험데이터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그 동안은 외국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 내 임상시험 수행으로 인해 타국가 시판허가에 비해 6~7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로 중국 시판 승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5개월, CFDA 심사평가에 9개월 이상이 소요²⁵⁾된다. 또한 자료의 모든 내용은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동 자료의 준비에만 4-5개월이 소요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 들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 원자료(raw data), 생산기록서 등은 영어 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약의 경우,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제품에 따라 상이)되며, 한국에서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단, CFDA는 중국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 진행하며, 심사과정도 생물학적동등성 허가에서 승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수입제품의 제품기준(specification)이 중국 내 기 등록제품에 비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 CFDA는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임상약 샘플 수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마다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의약품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품질검사 없이 통과하고,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입고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중국 해관 통관 시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25)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학의약품 신약의 경우 심사 대기기간이 11~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

의료기기는 CFD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CFDA는 수입허가 시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2014년 6월 1일 시행) 제2장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요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CFDA는 2, 3등급 의료기기 중 임상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 면제 대상으로는 ①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이 안정하며 시중 동류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비 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동류 제품의 임상시험 혹은 임상데이터의 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CFDA는 의료기기를 허가할 때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 내 CFDA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중복 시험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정 이원화

중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중국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내 생산되는 화장품과는 다소 상이한 규정으로서 수입 화장품 규정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로 나타났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화장품행정허가심사에 약 2개월, CFDA 행정접수센터에서 접수 및 발급에만 약 1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CFDA에서 행정심사 역시 약 20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된다. 단, 이는 제출한 서류가 완벽할 경우의 소요시간이며, 실제로 서류 보완, 제출 서류 구비 등 기타 문제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 내 생산된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사후 등록제에서 제품출시 전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나, 제품 처방과 제품판매포장만을 등록하는 등 여전히 수입화장품 규정과는 이원적

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 기간 및 검사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허가 제도의 국내 수입 규정 이원화가 WTO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수입할 때도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은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CFDA와의 MOU 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해시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고 중국 국경내 책임자 등록지가 푸둥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화장품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심사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을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관리 강화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해시 푸둥신구를 대상으로 시범적,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시행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지역에도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중국의 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정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CFDA에 ‘수입 화장품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동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수입화장품의 위생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특수용도 화장품(일반화장품)은 약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기능성화장품)은 약 4~8개월에 이르고, 제품 당 검사 비용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이 5,800~7,800위안,

특수용도화장품이 9,100~36,800위안이며, 그 외에 제품 기능별 추가 비용 및 기타 비용도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비특수용도화장품이 6~8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이 8개월~1년에 이른다. 또한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은 품목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批准文号)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위생안전성 검사와 위생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당국은 인증서류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 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화장품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적시 출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CFDA와의 MOU 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2016년 12월 중국 CFDA는 기존의 화장품위생규범(2007)을 개정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시행하였다. 동 규범에는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준용원료, 이화학, 미생물, 독리학, 인체안전성, 효능평가 검사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개정 규범에 신규로 포함되었거나 이전보다 강화된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리튬이온전지 안전 국가표준

중국은 2013년 12월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표준 제정을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중국 안전기준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이 국제표준(IEC 62133)과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표준에 없는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전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인해 중국 수출만을 위한 별도의 리튬이온전지 개발 및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등과 공조하여 중국에 대해 WTO TBT 협정 제2.4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응하였으나, 중국은 자국민 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없이 2016년 1월 31일부터 동 규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중국은 동 표준이 CCC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시험소에 제출하는 승인원에 대해 충전, 방전 조건 등 표기요구사항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나 영어 작성도 가능하며, 배터리 패키지 라벨 요구사항은 변체자가 아닌 간체자만 허용된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젓갈, 조미김의 과도한 검역기준 완화

중국 식품표준의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한국(식품공전)의 미생물 규격과 상이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은 젓갈을 수산조미품으로 분류하여 세균수(8,000 cfu/g)를 적용했으나, 젓갈은 비가열 제품으로서 원료 유래의 일반세균이 존재하여 수산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웠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 제공 및 개정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우리측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15년 젓갈의 미생물

기준을 개정(세균수 $n=5$, $c=2$, $m=10,000$, $M=100,000$, 대장균군 $n=5$, $c=2$, $m=10$, $M=100$) 하였다.

조미김의 경우 중국은 해조류 및 해조류 가공품 중 즉석조류제품으로 분류하여 세균수 규격(30,000 cfu/g 이하)을 적용, 조미김 원료 및 제조 가공 특성상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워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웠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 제공 및 개정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우리측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17년 김의 세균수 규격을 완화($n=5$, $c=2$, $m=30,000$, $M=100,000$)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 자료 확보 및 지속적 의견 제기로 우리 수출 기업에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 신청 시 CFDA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 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²⁶⁾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성분구성’이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26)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할 때 반드시 CFDA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번호를 취득 후, ‘보건식품 수입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 지재권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은 전 세계 지재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 정부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14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행동 계획(2014~20년)」을 수립하고, 2015년에는 「새로운 상황에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등 지재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지재권 통계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412건)이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였으며, 2016년에는 발명특허 출원이 1,338,503건으로 2년 연속 백만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상표 출원은 330만건으로 201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세계 1위 상표 출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 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지재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이 136천 건, 형사1심 사건은 8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재권 출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재권 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미국 USTR은 중국을 13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8월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2013년 8월 중국 「상표법」을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 전문 법원을 설립하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재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동 법의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재권 침해 현상이 근절되는 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투자 장벽

2017년 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시행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Negative Lis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설립전·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투자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 목록 외에도 투자 장려업종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 여타국의 투자 Negative List와 다소 차이가 있다. 2017년 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과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로 구분하고,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資准入負面清單)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동 목록의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는 기존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투자제한업종 목록(限制外商投資產業目錄)과 투자금지업종 목록(禁止外商投資產業目錄)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2017년 개정(제7차 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공식 발표하였고, 동 목록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2017년 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네거티브리스트(負面清單)’를 최초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대폭 축소하였다. ‘장려 산업’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 목록과 ‘금지’ 목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구분 하던 것을 이번에는 장려와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성한 것이다.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수가 93개에서 63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금지류는 기존의 36개에서 28개로 줄었다.
- 2) 혁신산업(스마트, 하이테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장려류 항목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 등 혁신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판 ‘목록’ 중 ‘장려류’ 목록은 348개로 2015년판에서 7개를 삭제, 6개를 신규 추가했으며, 35개 항목을 수정하였다.
- 3) 완성차 업체의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을 유지하되, 순수 전기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0년부터 완성차 분야의 ‘중국 측 다수 [50%(포함) 이상] 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판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위해

‘중국 내에서 2개 이상 순수전기차 업체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었다. 특히 1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2개 이상의 합자 순수전기차생산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를 폐지, 순수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오토바이의 생산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 4)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신용조사’, ‘도로 여객 운송’, ‘외국선박화물정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에 대한 개방 확대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일부 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던 업종, 예컨대 ‘신용조사’ 등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 5) 내·외자기업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 간소화 등 중국 정부의 내외자 기업 동일 기준 적용 기조를 반영하였다. 중국 상무부 쑤지원(孫繼文) 대변인은 2017년 6월 29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방법’을 수정해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련 행정수속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테마파크,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정치정당 특수학교,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도박과 색정업 등 내자기업에도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은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목록에서도 삭제되었다.
- 6)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 완화를 확대하였으며, ‘네거티브’ 이외의 외자 인수합병은 기존의 ‘심사(審批)’에서 등록(備案)관리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번 ‘목록’은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 수속을 보다 간소화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이를 2017년 ‘목록’의 최대 특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 관련 정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등록과 달리, ‘심사’는 서류제출 후 여러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으면 되며, 향후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등록(備案)관리방법’가 수정, 발표될 예정이다.

투자기업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 및 이행의무

중국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2017년 개정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에서도 완성차를 여전히 투자제한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투자자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을 투자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외국기업은 중국 내에 2개 이하의 동종(승합차류, 상용차류, 오토바이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지만, 중국측 합자파트너와 함께 중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기업을 합병할 경우 2개 이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외에도 중국은 자동차 완성차를 제조하는 합자기업에게 공장신설시 신에너지차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며, R&D 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할 뿐만 아니라 R&D 인력의 중국인 의무 고용(5% 이상) 요건을 부과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 관리방법」 제21조에 따라 자동차 완성차 제조 기업에 대해 수입부품의 가격이 60% 이상을 차지하거나 완성차 특징을 가진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완성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오토바이, 신에너지 자동차의 에너지형 파워배터리 및 항공운송회사에 적용되던 외자비율 제한은 철폐되었다.

내연기관 차량 생산·판매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의무

중국 정부는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의무 생산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2016년에 발표된 「기업평균연료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병행관리 잠행방법」에 따르면 9인승 이하 내연기관차량을 연간 5만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은 신에너지차량 누계점수(NEV Credit) 비율을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12%까지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17년 9월 중국 정부는 동 규제를 1년간 유예한 후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서비스 분야 중 로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법 자문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로펌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설립인허가 및 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로펌 설립 시에는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된다. 등록절차는 대표처 설립 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한국인 변호사 2명이 주재해야 하며, 개설 후 3년 경과 이후 타지역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로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가 부과된다. 해외로펌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수익에 대하여 먼저 세금(이익의 25%) 부과 후, 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다시 세금(세후 순 이익의 10%)을 부과한다.

이외 관광업에서 외자독자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금지되고, 중국도·소매 시장에서 외자 소매기업의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유통업에서 외국인이 특정상품 판매 시 중국내 점포를 30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중 제약제품,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목화, 농업용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판매하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소매기업의 경우 해외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사항을 적용시킨다.

금융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설립 및 영업을 규제한다. 구체적으로 외국금융회사는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 진출 시 사무소, 합자회사(지분 49% 이하)로 제한하고, 독자설립은 불가능하다. 합자증권사도 설립 초기 중국에서 브로커 업무를 제한한다. 다만 영업 2년 경과 후 신청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들은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인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하다. 선물업의 경우 외국인의 중국 선물회사 일부 지분 참여는 가능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중국정보통신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서 중국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기본통신은 49%까지, 부가통신은 50%까지 허용한다. 또한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중국 공업정보부(공신부)로부터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1995년 6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외상투자 장려업종’, ‘외상투자 제한업종’ 및 ‘외상투자 금지업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에 걸쳐 총 7번 개정하였다.

뉴스사이트, 온라인출판서비스,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등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투자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케이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을 기초통신업무는 49% 이내, 부가가치통신업무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높은 최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15년 개정 목록에서 전자상거래는 제한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게임시장은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인터넷 문화경영 금지 항목에 해당되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²⁷⁾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²⁸⁾ 발급시 내외국인간 차별이

27)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

존재한다. 출판시장의 경우 저작권문제 발생 시 외국기업의 권리 주장이 어렵다. 각 성(省)내 핵심적인 출판사(국영)를 통해 소속된 성(省)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국내 불법복제나 저작권 문제 발생 시에도 동 권역 위반으로 외국 기업의 권리주장이 어렵다. 또한 중국내 10개 내외의 출판사만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중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영화의 경우 연간 수입가능건수 및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DVD 출판매에 대한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쿼터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제작 포함 2~4편까지만 극장개봉이 가능하다. 영화 검열 제도로 인해 표현 수위의 한계 및 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약 16%, 타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방송의 경우 해외영화 및 드라마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22시) 편성이 금지된다.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프로그램은 당일 방송 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수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전송할 경우, 중국 광전총국의 '드라마 발행 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방송용 해외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판권 판매 등 뿐 아니라 공동제작, 기획,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이브 공연의 경우 공연개최 승인 절차와 보안서비스가 불투명하며, 음악에서는 해외음악 수입규제가 존재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음악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안전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한다.

- 28)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종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 출판관리장점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출판관리 장점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법률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입쿼터로 작용한다.

인도네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한·인도네시아 상품 무역은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배 증가하여 2011년 정점인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6년 14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 수출입은 각각 66.1억 달러와 82.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10.8%), 편직물(8.5%), 철강판(8.3%), 합성수지(6.3%) 그리고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4.7%) 등으로 5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38.5%를 차지하였다. 2016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주요 품목은 석탄(19.5%), 천연가스(16.7%), 동광(6.0%), 의류(6.0%), 목재류(4.0%) 등이며 이들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약 52.1%를 차지하였다. 2017년 들어서 양국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며 2017년 1~10월 누적액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 수출입은 각각 69.8억 달러와 80.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68~2017년 9월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투자금액 기준) 누적 금액은 101.7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ASEAN국가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3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 제조, IT, 서비스, 금융업이 주종을 이루는 추세이다. 최근 5개년(2013~2017년 9월) 동안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총 30.7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38.9%), 금융 및

보험업(31.6%), 농업·임업·어업(6.7%), 광업(5.6%), 도매·소매업(5.6%) 등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2013년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로 인해 사상 최대 규모인 22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4년 11억 달러, 2015년 12억 달러 2016년 11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1~9월 기준 13.7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보고된다. 한편, 1962~2017년 9월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기준) 누적금액은 36백만 달러이다.

한·인도네시아 간에는 2007년 한·ASEAN FTA가 발효(상품협정)²⁹⁾되었으며, 2017년 9월 현재 RCEP(2013년 5월 협상 개시) 등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인도네시아 CEPA(2012년 3월 협상 개시)는 협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입규제

휴대폰 생산공장 설립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4G 휴대폰/휴대용 컴퓨터/태블릿(이하 4G 휴대폰)과 관련 자국산 부품(Local Contents, 이하 로컬컨텐츠)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정보통신부 장관령 No.27, 2015」)을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4G 휴대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조립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을 위탁하는 제품이 아니면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역부장관령(No.41/M-DAG/PER/5/2016)」은 3G 휴대폰은 API-U(교역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API-P(제조 공정상 소비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자) 모두를 수입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4G의 경우 API-P만이 수입허가대상이다. 당초 2013년 1월 발표된 무역부 장관령에 의해 모든 휴대폰(3G, 4G 포함) 수입/판매사는 수입면허 갱신시(2016년)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

29)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및 9월에 발효되었다.

였으나, 3G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장관령(No.41/M-DAG/PER/5/2016)」에 의해 생산시설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휴대폰 생산업체(삼성전자, LG전자)는 4G 휴대폰을 인니 현지에서 직접 조립 또는 위탁생산하고 있어 현지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나, 애플의 경우 현지 조립, 위탁생산을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주재국 내 합법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애플은 인니 당국이 R&D를 로컬컨텐츠로 인정할 경우 애플 R&D 센터를 인니에 설립하는 것을 인니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전자제품(휴대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 라이선스

인도네시아는 휴대폰, 핸드헬드/테블릿 PC³⁰⁾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가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³¹⁾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수입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약 52개의 품목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수입 허가 절차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IP(Producer Importer)나 IT(Registered Importer)의 등록이 필요하며,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완제품 판매로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명(Import Verification) 실사 후에 IP/IT 구분 및 등록이 가능하다.

30) 동 품목의 세부 코드는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이다.

31) 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공항(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조치에 따라 통관이 최소 22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API-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nal Importir)규정은 2012년 5월 처음 발표되었으며(무역부 장관령 No.27/2012), 2012년 9월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³²⁾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여타군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용 수입자(API-P)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자동 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³³⁾에서만 수입이

32) 특수관계의 종류로는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이 있다.

33) 무역부가 지정한 8개 항구는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이다. 단,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수입권고(RIPH: Horticulture Product Import Recommendation) 인증서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RIPH 인증서와 수입자지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입주류 수량제한

인도네시아는 수입 주류에 대해 양허관세율을 150%로 적용하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수입 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정 주류 수입자로 등록을 하면 무역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 수량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통관

선적전 검사로 인한 통관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

인도네시아는 무역부장관령 「No.19/2008」과 「No.05/2005」에 따라 일부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지정된 검사기관(PT Surveyor Indonesia 또는 Sucofindo)에 의한 선적전 물품 확인(pre-shipment verification)을 시행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은 설탕, 쌀, 소금, 광학디스크(공CD 포함) 및 CD생산장치, 섬유, 오존소모제품, 칼라프린터·복사기, 비위험 및 독성 물질, 중고재, 철강, 일부 전자제품, 기성복, 장난감, 신발, 식품·음료, 세라믹, 판유리, 타이어, 진주, 원예농산물 등이다. 선적전 검사는 관세 포탈을 위한 부정 수입이나 밀수 등 비정상적·불법적 수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전 검사의 본래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통관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과 지정된 선적전 검사기관에 의한 운영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원에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농업부 장관령, 「No.42/Permatan/OT.140/6/2012」)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선원에 농산물의 통관 항구를 종전 8개 항구에서 1개 공항, 3개 항구로 축소하였으며,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³⁴⁾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외적으로 국가인정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체결국에 대해서는 자카르타 항구(판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RA 체결 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탁송화물 통관

인도네시아는 탁송화물의 수입과 관련한 「재무부령(No 188/PMK.04/2010)」을 2016년 말에 개정(「재무부령 (No.182/PMK.04/2016)」)하여 2017년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송화물 면세

34) 신선원에 농산물의 통관은 자카르타(수카르노 하타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타 항구)로 제한하고 있으며, 통관 검사는 종전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로 강화되었고, 쌀, 사과, 감, 미역 등에 대해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쿼터를 책정하고 있다.

한도를 미화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수입신고서 제출 방법에 대한 구분기준이 종전 중량 기준(100kgs)에서 금액기준(미화 1,500달러)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미화 100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 탁송화물에 대해서는 7.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고 정상적인 수입신고서(PIB)가 아닌 Consignment Note 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입통관을 간소화하였다. 따라서 미화 1,5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자 인증을 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으나, 수입물품이 수입요건 확인대상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 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절차적 투명성 역시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조달시장은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가표준(SNI)인증 의무 품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하고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2014년 상반기 기준 강제 인증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품목의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해당 인증 품목은 ①SNI 인증 신청 - ②LSPro의 서류 심사 - ③기술 심사 - ④패널 최종 검사 - ⑤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SNI 발급에는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단,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 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015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SNI 강제취득품목을 약 60여 개 가량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는 라면, 비스킷, 우유 파우더 등 식료품과 플라스틱 패키징, 세제, 가스난로, 가정용 세라믹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SNI 강제인증 품목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인도네시아 수출 비관세 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인증을 위해 과도한 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라벨 강제규정 법령 실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라벨 강제규정(62/M-DAG/PER/12/2009)」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46개 대분

류) ②건설 자재(총9개 대분류) ③자동차 부품 등(총24개 대분류) ④기타 제품(총24개 대분류) 등 이상 4개 군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5년 기준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품목은 151개이다.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 (Directorat Genderal Perdag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4월 전자제품, 통신기기, IT 기기, 자동차 부품 등에 인도네시아로 된 제품라벨 및 포장에 영구 부착하는 라벨링 제도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했다. 동 규제는 스티커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각인, 인쇄, 접착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제품 개발 기간 및 비용 증가 등 기업에 부담이 되었으며 시행유예 기간이 없어 업체들의 대응이 어려웠던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는 WTO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여 6개월간의 시행유예 성과를 거두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나친 수입검역 강화

2015년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민의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9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과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등 한국 농산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등록은 2016년 1월에 마친 상태이다.

한편, 2014년 9월 25일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축산물에 한해 적용되던 할랄인증 의무화가 2019년부터는 전체 식품류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최근 수입식품등록허가(ML: Makanan Luar) 관련 강화 조치로 한국 농식품의 수입 지연과 컨테이너 보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ML 제도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경우 식약청(BPOM)의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입식품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한 제도로, 제품의 포장 일부 변경, 표기사항 변경 등 미세한 변경 사항에도 해당 식품의 식약청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수입식품등록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장 큰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 인증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SNI는 의무 품목과 권장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무 품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밀가루, 설탕, 코코아 파우더, 물, 커피조제품 등이 SNI 의무 대상 품목이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2017년 11월 말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철강금속제품 1개 품목(주석도금강판)과 화학공업제품 1개 품목(질산암모늄) 등 총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22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경우 2012년 6월 29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2013년 12월 10일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가 2014년 3월 2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공고를 한 바 있으나, 다시 제소되어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2017년 11월 22일 조사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2월 22일로 3개월 추가 조사기간 연장된 상태이다. 또한, 주석도금강판(Tinplate)의 경우 2017년 10월말 일몰재심조사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인도네시아의 대한민국 반덤핑 규제는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등 최근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세이프 가드

2017년 11월 말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2개 품목(I-H형 합금강, 광택지 및 판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I-H형 합금강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17일 연장재심조사를 개시하였다. 반덤핑 규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대한민국 세이프가드 조치 또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동된 것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투자제한목록(Investment Negative List)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투자제한목록을 개정한 인도네시아 대통

령령 「No.44/2016」을 발표했다. 2014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정된 동 리스트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신규·추가 개방 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개정 투자제한목록에서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금지(Appendix I)하고 있으며, Appendix II의 145개 업종 중 95개 업종은 SMEs를 위한 업종으로 유보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 펌프·압축기 등 50개 업종은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조건으로 개방하였으며, Appendix III에는 투자지분, 특별허가 등 일정한 제한 하에서 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불포함된 업종은 여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

2014년 4월 목록과 2016년 5월 개정 목록을 비교해 보면, 4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을 제한이 완전 철폐되었으며, 영화산업·전자상거래·관광·보건 등 총 65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녹음스튜디오, 배급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영화산업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내투자만 허용해 오던 전자상거래(플랫폼 기반 마켓플레이스, daily deals, 가격비교, 온라인광고)와 쇼핑몰 내에 입점하는 백화점(면적 400~2,000m²)은 일정한 제한 하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베트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2016년 한국과 베트남간의 상품 무역은 2015년 대비 20.1% 증가한 451.3억 달러로 대베트남 수출입액은 각각 326.3억 달러(전년대비 17.5% 증가)와 125.0억 달러(전년대비 27.4% 증가)이며, 무역수지는 201.4억 달러 흑자이다. 2016년 기준 한·베트남간 상품 무역액은 양국 간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4.9억 달러)보다 약 92배 증가한 교역규모이며,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과 비교해 약 6.3배 증가하였다. 2017년에도 한·베트남 간 상품 무역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액(11월 누적치 기준)이 436.9억 달러(전년동기대비 48.4% 증가)와 148.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9.2% 증가)에 이르고 있고, 한국의 상품 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2016년(6.6%)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15.9%), 반도체(14.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7.7%), 기구부품(5.1%), 합성수지(3.7%)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25.2%), 의류(19.6%), 신변잡화(5.1%), 컴퓨터(4.4%), 목재류(3.4%) 등이다.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는 매우 미미한 반면,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투자금액 기준)는 2017년 9월까지의 누적금액이 166.7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한국의 제3위 해외투자 대상국)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투자금액이 총 80.5억 달러(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5.1%를 차지)를 기록하고 있다. 1968~2017년 9월 누적액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70.1%)이며, 특히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12.8%)와 의복·의

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7.6%), 1차금속제조업(6.0%), 섬유제품제조업(5.9%), 전기장비제조업(5.3%)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광업(8.5%), 금융 및 보험업(5.2%), 도매 및 소매업(4.5%), 부동산업 및 임대업(4.2%)에 대한 투자 비중도 높다.

한국과 베트남간에는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가 체결·발효된 상태이며, 현재 양국은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수출통제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코코넛 등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석재 포함), 금속, 철·비철 금속 Scrap 등에 대하여 0~5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세 부과 여부는 재무부 시행령인 「Decree No. 122/2016/ND-CP」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은 현재 「Law 107/2016/QH13」을 통해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211개의 상품그룹(HS CODE 4단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이 제품가격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5~20%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은 가공 단계가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수출세율은 높게 책정하고 가공 단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기법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수입규제

무역 거래 활동 관리를 위한 신규법 제정

베트남 정부는 대외무역의 발전과 수출입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대외무역관리법」(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 Law 05/2017/QH14)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 관리방식, 수출입 허가·금지·잠정중단·제한, 통관 전 검사규정 등 다수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결정문 등)에 중복·산재돼 있던 수출입 관련 규정을 「대외무역관리법」으로 통합하였으며, 그동안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무역 규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를 동 법의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수입 금지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제품

베트남은 2013년 11월 발표 시행령(「Decree 187/2013/ND-CP」)과 2014년 1월 발표 시행규칙(「Circular 04/2014/TT-BCT」)을 통해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기, 탄약, 폭죽, 중고 소비재, 국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된 각종 출판물, 일부 중고 자재와 운송수단, 화학물질, 각섬석에 속하는 석면 함유 자재·제품 등 12개 품목이 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소관 부처별로 지정해 놓고 있다. 특히,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의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 담배, 국가안보 관련 물품, 국경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목재류, 민간 항공기로 사용되지 않는 비무장 항공기와 군용 무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갑차, 페인트볼 총기류 및 기타 국가 안전과 방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중고 기계·장비 등의 수입은 별도 규정을 통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

FDI 기업의 무역거래 및 국내 유통권 제한 품목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할 수 없는 품목들을 시행령(「Decree 23/2007/ND-CP」)과 그 지침(「Circular 34/2013/TT-BCT」)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담배류, 석유·역청유, 신문·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디스크·테이프 등의 기록용 매체, 항공기 등을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으며, 쌀, 담배류, 원유 및 가공유, 약품, 폭발물, 서적·신문·잡지, 귀금속 및 귀석, 모든 소재의 녹음·녹화물의 현지 유통이 금지된다.

일부 품목에 대한 자동 수입 라이선스 규정 폐지

그동안 베트남에서 비료나 철강재·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동 수입 라이선스의 취득이 요구되었으나, 2017년부터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을 수입할 때 발생하던 각종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 비료 수입 관련 시행규칙(2017년 5월 29일자 「Circular 07/2017/TT-BCT」)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 7월 13일부로 일부 비료 품목에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료의 수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었다. 또한 일부 철강재·철강제품의 수입 시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규칙(Circular 14/2017/TT-BCT)이 발효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동 품목의 수입이 보다 용이해졌다.

수입품의 품질검사

베트남은 2007년 제정된 「제품·재화 품질법」(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Law 05/2007/QH12)에 따라 수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동 법 및 관련 시행령(「Decree 132/2008/Nd-CP」)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Group-2에 속하는 제품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소지가 있는 기타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 품질검사 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검사 대상 품목(Group-2 품목)은 안전 위협 가능성과 시기별 국가 관리 필요성에 근거해 관할 행정부처에서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적합성 평가 결과 검사, 상품 라벨 검사, 표준 또는 규정 적합성 스탬프 검사, 검사 대상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검사 등이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공지한 적용 표준 또는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샘플 테스트가 요구될 수도 있다.

수입자는 적용 표준(applicable standards)을 공지하고 상품 라벨상에 해당 표준을 표시해야 하며, Group-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입할 때에는 규정 적합성(regulation conformity)을 공지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규정 적합성 공지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자체 평가 결과, 적합성 평가 기관의 평가, 관련 기술규정에 따른 규정 적합성 증명, 베트남 관할 기관에 의해 지정됐거나 품질검사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인정되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수출 국경 또는 수입 국경에서 확인한 평가 결과 중 하나를 근거로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2017년 8월 17일 베트남 국내 유통 또는 수입을 위해 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총리 결정문(Decision 37/2017/QĐ-TTg)이 발표돼 10월 5일부터 발효됐으나, 이미 각 부처별로 관할 품질검사 대상 품목을 지정한 것은 물론, 보다 세부적인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 기존 품질검사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의 시장 개방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한 저가의 저급 제품 및 모조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완성차 수입규제

베트남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완성차를 수입할 수 있는 자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자동차를 별도 법규에 따라 관리되는 수입 품목 또는 FTA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입완성차에 대한 판매 가격 인상효과를 유발시키는 특별소비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5월 12일자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20/2011/TT-BC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9인승 이하 승용차(중고차 제외)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의 수입·유통권 위임장 또는 수입·유통 지정업체 증빙서류, 해외 공관의 공증을 받은 총판 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 외에는 자동차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6년 7월 1일 개정 투자법이 발효되면서 「Circular 20/2011/TT-BCT」의 효력 또한 자동 소멸되어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완성차 생산·조립 및 수입업을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에 포함시킨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Law 03/2016/QH14)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장진입 장벽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를 별도 법규에 따라 관리되는 수입 품목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자간 FTA 협상에서도 자동차를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왔다. 그 일례로 한·베트남 FTA에서 자동차 부품은 관세양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완성 자동차는 3,000cc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기준은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내 판매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특별소비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법의 세부규정 및 일부 조항 안내 시행령(Decree 108/2015/ND-CP)」이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수입완성차의 과세표준이 기존 수입가격(CIF가격+관세)에서 수입업체의 국내 판매가격(수입가격+국내 운송비+마케팅 및 영업비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베트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변화로 수입완성차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국내 생산 9인승 이하 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현 ‘생산기업의 차량 판매가’에서 ‘생산기업의 차량 판매가-현지 생산 부품 가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동 방안은 특별소비세법 일부 조항 개정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베트남 국내 생산 차량의 현지화율을 높이는 동시에 판매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新)시행령의 세부지침 미비

2015년 11월에 개정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KHCT」)이 2016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르면, (1) 제조연한 10년 이내의 것(제조연도부터 베트남 도착 연도기준), (2)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관련한 베트남 국가기술기준(QCVN) 또는 국가표준(TCVN), G7국가표준에 의거하여 제조된 중고 기계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중고부품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사용 중인 기계의 교체나 수리용으로 품목 및 수량이 인정될 시에만 수입 가능하다. 또한 동 시행규칙에서는 프로젝트 투자 신청과정에서 수입 예정 중고기계 리스트를 제출하여 관할기관의 투자허가를 받을 시, 상기 수입요건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신규 시행규칙은 베트남 국내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저품질 중고기계 도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 낙후된 기술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 시행규칙 대비 제조연한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 수입 허용 품질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입 가능 중고기계의 기술표준 세부기준 및 수입요건 적용 면제와 관련한 세부지침의 미비로 실질적인 중고기계 수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지면서 동 시행규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관

HS 코드 세부분류 비일관성으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베트남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코드 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거나 담당세관이나 직원에

따라 다른 HS코드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재 약 4,0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원부자재 수입이 필요한 바, HS 코드의 비분류로 인해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복잡하고 낙후된 통관절차 및 부정부패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 통관 절차와 관련된 결정서(Nos. 509/QD-BTC, 510/QD-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였으나,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제기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으로는 △세관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납부의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으로 대응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와 법규가 미비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또한 △세관 또는 세관원의 자의적인 HS Code분류 및 수입관세 부과 △세관별 상이한 주말 및 휴일 통관 가능여부 △만연한 부정부패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없이 세관과 담당자에 따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청 등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다양한 부서 및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로 인해 통관이 더욱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각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없어 절차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셋째,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 등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 입장에서 갖추지 못하였다.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수출입관리실 및 산업무역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 받은 공단 관리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FTA 규정에서 원산지 발급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관은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직원의 이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직원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직인이 수기로 날인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전자 직인이 날인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 HS CODE의 자의적 분류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 가능성, 관세부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의제기 및 시정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조달

내국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및 관행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내국기업을 우대하는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해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능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

국가 독점사업 및 국영기업 보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쟁체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가 소유·관리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적이 국가 관리의 편의성 도모에만 치우쳐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념 정립 미비, 특히, 토지사용, 시장가격 결정, 자원배분과 관련한 국가의 불분명한 임무와 역할 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일례로, 베트남 국영기업은 교통, 전력, 석유·가스, 금융, 제지 등 주요 산업부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개정 「투자법」을 통해 각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인허가 조건 규정을 금지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 현재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6,000여 개의 사업 조건 중 대다수가 개정법이 사업 조건 규정을 허용한 국

가안보, 사회질서, 보건 등의 목적 요건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인허가 조건은 사실상 베트남 민간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독점사업을 명시한 별도의 법규가 부재한 상황으로, 각 산업별로 관할 부처가 마련한 법령을 통해서만 국가 독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작성한 국가 독점 상품 및 서비스 규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국가 방위와 안보, 공업화학물질 제조, 유통·수출입, 다목적 수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금괴(gold bar) 생산 및 비가공 금의 수출입, 복권사업, 담배 수입 등 7개 분야가 국가 독점 상품분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 독점 서비스 분야에는 해양 수로안내, 해양안보, 항공기 운항, 출판, 조폐 및 화폐 발행, 철도 인프라 시스템의 개발·관리, 송전 및 국가 전력 시스템 운영, 관개공사의 관리와 시스템 개발, 상류지역 삼림 식수 및 보호·일반 삼림 보호와 특수 목적의 삼림 이용 등 9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6년 현재 9개의 국가경제그룹(국영 대기업)과 12개의 국영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 밖에도 다수 기업에 국가 자본이 투입되어 있어 국가의 통제와 보호 하에 운영되고 있다.

불분명한 법규로 인한 시장진입 및 인허가 어려움

베트남 현지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여전히 여러 사업 분야에서 시장진입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광범위한 사업 범위를 지닌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는 유통업이나 교육업과 같이 명시적으로 베트남의 WTO 서비스 양허표 및 베트남의 현지법상 제한되지 않는 사업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인쇄업과 출판업과 같은 특정 분야는 아예 외국인 투자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재량권에 의해 사업진출이 좌지우지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독점금지 규제

베트남 내에서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관련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특정 회사가 점유하도록 형성되는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인수합병을 진행 중인 두 회사의 ‘관련 시장’ 총 점유율이 30%~50%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회사들은 인수합병거래가 성사되기 30일 전에 베트남 경쟁관리국(VCAD)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며, 베트남 경쟁관리국의 승인서면을 득할 시에만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관련 시장’ 및 ‘시장 지분’과 같은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시장 점유율’을 산출하는 근거는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심사당국의 승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베트남 경쟁관리국의 시장 점유율 조사·확인 작업에만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진행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베트남의 WTO 무역상 기술장벽 통보 현황

2007년 WTO 정식 회원국인 된 베트남은 WTO/TBT 협정에 의거,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규제의 도입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5월에 발간된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의 TBT 협정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6년 베트남이 WTO 통보한 신규 기술규정 사례는 총 106건이며, 2016년에는 20건의 TBT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에는 베트남이 WTO 사무국에 총 23건의 TBT를 통보하였다.

국제표준 부합 일부 품목에 대한 베트남내 품질검사 강제

베트남에서는 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등과 관련된 제품의 표준규격에 있어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이 통용되는 등 특별히 더 엄격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가 요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할부처 혹은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전기 제품의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변동

2011년부터 「경제적·효율적 에너지 사용법(Law 50/2010/QH12)」을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자국 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과 같은 에너지 효율 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산업무역부 주관 하에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사무용·상업용기기에 에너지라벨을 부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2017년 3월,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 효율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시행 일정(Decision 04/2017/QD-TTg)」이 공표돼 4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개 품목(LED 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됐으며, 기존 지정 품목 중 승용차의 적용 범위가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자발적 이행 기간을 거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 말에는 「산업무역부 관할 에너지 사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 규정 시행규칙(Circular 36/2016/TT-BCT)」이 공표돼 2017년 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시행규칙은 기존 복잡했던 에너지 효율 인증절차의 개선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현지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제도에서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의 인증제도 전환, 6개월을 주기로 갱신해야 했던 인증 갱신규정 폐지, 동일 모델에 대한 시험 결과 인정 등 에너지 효율 인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 사회 참여를 적극화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 역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대베트남 수출 기업은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 조치

세이프 가드

2017년 9월 말 현재 베트남은 식물성 기름, 글루탐산소다, 반가공 합금 철강재, 착색아연도금강판 등 총 4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중이며, 2017년 5월 12일에 화학비료(6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다. 이 중 2013년 8월 23일 발동한 식물성 기름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7년 5월 8일부터 4년간의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됐다. 화학비료의 경우, 베트남 국내 생산량 대비 상대적으로 급증한 한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자국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토대로 잠정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상태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결정문(Decision 3044/QD-BCT)에 따르면, 2017년 8월 19일부터 수입 DAP 비료에 대해 톤당 약 82달러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며,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을 최장 200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 조항에 따라 2018년 3월 18일 종료될 예정이다. 종료일 이전에 세이프가드가 정식 발동될 시 잠정 세이프가드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반덤핑

현재까지 베트남은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중국(홍콩 포함)산 H형강, 중국·한국산 도금강판 등 총 3건의 반덤핑 조치를 발동했으며, 한국산 제품과 관련된 조치는 도금강판(Coated steel sheets)에 대한 것이다. 한국산 및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6년 3월 10일 개시되었으며, 2016년 9월 1일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최종 반덤핑 판정이 있었다.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2017년 4월 14일부터 베트남은 POSCO 및 POSCO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 4개사의 도금강판에 대해서는 7.02%의 반덤핑 관세를, 기타 한국 기업의 도금강판에 대해서는 1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선별적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제도로 전환

그동안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분야에 상관없이 법인세 및 토지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법상 8대 중점 투자우대 분야(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를 두고 있으나, 각종 엄격한 기준 하에서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를 우대하는 선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하노이, 호찌민, 기타 항만도시 인근의 공단 지역이 제반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도 이러한 지역에 투자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단 지역 대부분이 투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최소 공단임대면적(1ha) 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센티브 혜택이 가능한 공단은 경우에 따라 1ha 당 투자금액 2~3백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전가격 과세 규정의 강화

베트남 과세 당국은 최근 한국기업이 많은 하노이시, 호찌민시, 박닌성,

동나이성 등에 이전가격 전담조사반을 설치해 중점적인 이전가격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 이전가격 조사가 단순한 물동거래뿐만 아니라 상표사용료, 기술로열티, 경영자문료 등의 용역거래로 점차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세심한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Decree No. 20/2017/ND-CP(2017년 2월 24일)와 Circular No. 41/2017/TT-BTC(2017년 4월 28일)를 공표했으며, 동 개정 법령은 2017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기존에는 많이 과세하지 않던 용역거래(로열티, 경영자문료, 기술 용역료, 이자 등) 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다수가 세무 조사 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세무 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 규정의 변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내 외국기업 대표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 곤란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는 법인설립이 필요치 않은 무역, 건설분야 기업들의 손쉬운 진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이 베트남 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를 개인(natural person) 및 법인(juridical person)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Circular 32/2016/TT-NHNN)을 발표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기존의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베트남 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한 개인기업(private company, household business)과 기타 단체에 대한 예시를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법인격이 없는 대표사무소,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PMO) 등은 더 이상 사무실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동 시행규칙 발효일(2017년 3월 1일)로부터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은행들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신규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기존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무소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 중인 계좌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베트남 정부는 2014년 개정된 「사회보험법(58/2014/QH13)」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며, 해당 사항과 관련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월 임금·수당의 8%, 고용주는 17.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보험료 산정 시 최고 상한금액(ceiling price)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주 및 근로자는 월 임금·수당의 8% 모두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 임금·수당이 최고 상한 기준금액인 2,600만 동(약 1,140달러)을 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 의무 납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 제도에 의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되고 근로자 중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소매·유통업 진출 관련 경제적 수요심사

베트남은 소매·유통업을 허가할 때 실시하는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지 않아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매점 허가 시 실시되는 ENT와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매점을 개설

하거나, 성이나 직할시에 의해 상거래활동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이며, 매장 건물의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에는 ENT를 받지 않아도 된다.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수요 평가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 대표자 선정기준이나 심사과정 및 소요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소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따르면 2016년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5만 8,217건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산업재산권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및 역내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7년 IP Index에서 베트남은 10.34/35점을 받아 조사 대상 45개국 중 37위를 기록했으며,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에서도 5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은 2016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국이 작성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체제 관련 연례 감시 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USTR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위조품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것은 물론, 도서·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케이블 및 위성 신호 도용이 지속되는 등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민간단체인 Business Software Alliance가 2016년 5월 발표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결과,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은 2013년 81%에서 2015년 78%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 수준(6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는 2015년 기준 5억 9,8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 미비와 능력 제약으로 인해 지식재산권법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

해외 제조사는 직접 수입, 등록된 상표·제조방식·산업디자인 등을 사용한 베트남 현지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현지 배급사 또는 에이전트 지정, 신규 투자법에 따른 벤처 설립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에서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은 시장 조사 또는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현지 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및 전문지식 활용, 해외 시장 진출 초기에 수반되는 자금조달 부담 및 위험 분산 등 현지 시장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시장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엄격한 규제, 관할 당국 승인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라이선스 사업을 구축하는 데 수반되는 상당한 관료주의적 장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적합한 상품 제조 및 판매 능력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는 2차 라이선스(sublicense)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부연하면 베트남에는 2차 라이선스의 합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라이선스 계약자가 자신의 라이선스 사용이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나, 2007년 WTO 가입 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2007년 이래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 및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6년 발표된 「상법 시행령」(Decree 35/2006/ND-CP)과 시행규칙(Circular 09/2006/TT-BTM)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ASEAN FTA에서 프랜차이즈 서비스에 대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49%)을 철폐한다고 약속하였고,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에서 동 분야에 대해 상업적 주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점 설립이 허용되도록 양허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현재까지 베트남에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완전히 개방한다는 내용의 법률은 없는 상태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매업 라이선스 계약의 대부분은 해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 기업이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의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금의 조달과 베트남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비효율적 공급망, 자산비용 상승 및 직원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작권 보호 미흡

베트남 정부가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재권 시행령을 2015년 4월 15일 공포·시행함에 따라 향후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수준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많은 콘텐츠가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는 반면, 우리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관계자(유통업자·가수·음반회사 등)와 저작권 및 수익금, 현지 유통망,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상표권 침해 사례 빈번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는 상표권 침해이다.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의 2016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상표권 침해 관련 사례가 총 1,927건에 이르고 있는 반면, 산업디자인 침해(27건)나 지리적 표시의 침해(2건) 및 특허·실용신안의 침해(1건)는 미미하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국제 출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상표가 등록된 개별 국가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만 유효한데,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제에서도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등록주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실제 사용 여부보다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상표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최초 진출 단계에서 투자자 명의의 상표권 등록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 증가

최근 베트남 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조품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이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모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 협회(VATAP)에 따르면, 베트남에 유입되는 해외 모조품의 종류는 화장품과 식품은 물론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조품의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

모조품이 통관되어 베트남 내로 유입·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해야 하며, 베트남 세관에 지재권 보호를 신청·등록해야 한다.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은 없으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해 이와 관련된 행정 비용이 발생된다. 베트남 세관 당국에 의한 지재권 보호 기간은 해당 신청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한·말레이시아 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01~2013년 동안 연평균 9.3% 증가하여 2013년에 최대 규모인 196.8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6년에는 150.4억 달러(한국의 교역비중 1.7%)를 기록하였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상품 수출액 및 수입액은 각각 75.3억 달러와 75.1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0.3억 달러 흑자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15.9%), 반도체(14.1%), 석유제품(9.8%), 합성고무(4.1%), 철강판(3.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9.7%), 천연가스(18.4%), 석유제품(11.1%), 컴퓨터(4.5%), 목재류(3.5%) 등이다.

1962~2017년 9월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65.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도착금액 기준)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주요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31.4%), 부동산·임대(18.0%), 전기·전자(16.3%), 도·소매(16.0%), 비즈니스서비스업(9.7%) 등이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우 높다. 한편 1968~2017년 9월 동안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49.6억 달러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61.8%), 광업(22.7%), 도매 및 소매업(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1%) 등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에는 한·ASEAN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수출통제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³⁵⁾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는데, 2016년 12월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링깃/톤이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4.5~8.5%까지의 수출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허가면허(Import Permi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수입을 제한하는 대상 물품의 범위는 식품(food products), 중장비(heavy machineries), 복사기(photocopy machines), CD제조기(compact disc makers), 마그네틱테이프(magnetic tapes), 철(iron steel) 등 총 33개 품목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이 말레이시아의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면허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35) 「관세법 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 2013」에 의거한다.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고, 수입허가면허의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품목마다 다르다는 점도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수입허가 관련 사항은 말레이시아의 수입금지 관련 법³⁶⁾에 따라 국제통상산업부(MITI)가 관할한다. 또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로 관련 서류는 MITI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³⁷⁾를 수입할 경우 AP(Approved Permit)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면허를 발급하는데, 특정 조건은 △기존의 완성차 수입을 위한 AP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반제품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클래식 자동차 및 고전 자동차 수입, △연구개발, 전시회, 자동차 경주대회 출전을 위한 수입 등의 조건을 말한다. 또한 AP는 연간 신규차량 등록대수의 10%선으로 제한되어 연간 5~6만대 정도가 허용되고 있다. AP는 「제1차 국가자동차정책(NAP)」에서 철폐하기로 시한을 발표했으나, 「제2차 NAP」에서 철폐기간을 연장(Open AP(중고차용) 2015년, Franchise AP 2020년)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6) Customs Act 1967, Customs(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08 등에 따른다.

37) 이에 포함되는 HS 품목코드는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이다.

반덤핑 조사 및 제소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총 73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 49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총 39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부와 45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대해 199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총 15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 호주, 중국, EU,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에 이어 11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고, 총 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인도, 중국,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EU,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10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게 7위의 수입국이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원심)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했으나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철강제품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덤핑조사 신청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더욱 약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철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졌다. 또한,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연맹(MISIF)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철강공장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수입품에 의해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철강업체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게 반덤핑, 긴급 수입제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2017년 12월 현재 4건의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1건은 반덤핑 조사중이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강철 선재, 석도강판,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냉연코일이다. 강철 선재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19일, 석도강판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6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12일, 냉연코일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23일부로 각각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냉연코일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7일 조사가 개시되어 2016년 5월 24일 최종판정에서 3.78~21.64%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15일 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10월 12일 예비판정에서 현대비앤지스틸 등 3개사는 미소마진 판정이 났고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7.27%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긴급수입제한

말레이시아는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 1차례씩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에는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우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없이 2011년 8월 22일에 조사가 종결되었다.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재압연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4년 8월 14일에는 열연 강판(Hot rolled steel plate)³⁸⁾에 대한 긴급

38)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이다. 열연강판 제품은 가전제품, 자동차,

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1년 257,591톤에서 2012년 292,238톤으로 13% 증가했고 2013년에는 367,172톤으로 26%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5년 6월 30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2015년 7월 2일부터 1년간 17.4%의 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후 1년 간 13.9%, 그 이후인 2017년 7월 2일부터 1년 동안은 10.4%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열연강판 중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후판(두꺼운 강판)의 수출량은 2011년 47,596톤, 2012년 45,307톤, 2013년 70,965톤, 2014년 47,213톤이었다. 말레이시아의 긴급수입 제한조치로 2018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후판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11일에도 2011년과 같은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³⁹⁾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2년 69만4,305톤에서 2013년 80만7,647톤으로 16% 증가했고 2014년에는 89만8,023톤으로 11% 증가했다.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는 앞서 이루어진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이 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4년 6월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5년 2월 최종판정에서 중국산과 인도네시아산에 대해 2.49%~25.4%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은 미소물량으로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더 이전인 2011년에도 열연 코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내의 재압연사들의 반발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일련의 조사를 신청한 말레이시아 기업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보유한 Megasteel사이며, 연간 열연코일 3,200만톤과 냉연코일 1억 4,500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 제조 등에 사용된다.

39)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36 000, 7208.37 000, 7208.38 000, 7208.39 200, 7208.39 900, 7225.30 000이다.

2016년 5월 29일에는 강선재와 변형된 코일철근 (Steel wire rod and deformed bar-in-coil)⁴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인 철근의 수입량은 2012년 10월~2013년 9월 동안 259,331톤에서 2013년 10월~2014년 8월 529,001톤으로 104% 증가했고 2014년 10월~2015년 9월 동안에는 1,347,593톤으로 155%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6년 9월 23일 예비판정에서 2016년 9월 27일부터 200일 동안 13.90%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017년 4월 14일 최종판정에서 긍정판정이 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13.90~11.90%의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변혁프로그램(ETP)을 추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⁴¹⁾과 불투명한

40) 관련 한국산 품목은 KHS 7213.10, 7213.91, 7213.99, 7227.900이다.

41) 말레이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10%의 특혜 세제를 부여한다.

조달체제로 인해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인 바, 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공급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해져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무역업 면허(WRT)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 요건(100만 링깃(약 3.2억 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특별소비세 부과 내외국업체 차별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특소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활동 비율에 따라 특소세를 환급해주고 있어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소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수입방식(CKD, CBU)⁴²⁾에 따라 60~105%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동차 브랜드(Proton, Perodua)에 비해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야하는 높은 특소세는 현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 관련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수입산 부품을 꺼리게 되어 완성차 뿐 아니라 현지 자동차 공장으로의 부품 수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42) CKD(Complete Knock Down)는 반조립제품을, CBU(Complete Business Unit)는 완제품이다.

태 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2016년 기준 한국과 태국 간의 상품 무역액은 110.4억 달러로 태국은 우리나라의 열다섯 번째 교역국이다. 양국간 상품 무역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단, 2009년 제외)하여 2011년 최대 무역액(138.7억 달러)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수입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한국의 대태국 상품 수출입은 각각 64.8억 달러와 45.6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19.2억 달러 흑자이다. 2016년 한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6.1%), 반도체(7.5%), 합성수지(5.7%), 알루미늄(2.8%), 기구부품(2.7%)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11.7%), 컴퓨터(5.8%), 임산부산물(4.6%), 전자응용기기(4.0%), 유선통신기기(3.5%) 등이다.

한국과 태국간 투자관계를 보면 주로 한국의 대태국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1968~2017년 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투자금액) 누적금액은 24.8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에서 0.6%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투자금액)는 총 6.0억 달러가 시행되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2.0%), 건설업(14.9%), 도매 및 소매업(9.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6.6%), 금융 및 보험업(5.0%) 등이다. 한편 1962~2017년 9월 태국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누적금액은 30.3 백만 달러로 미미하다.

한·ASEAN FTA에서 태국은 2009년 9월 1일 투자협정이 발효되었고 이후 2010년 1월 1일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이 발효되었다.

정부조달

국산품 우대 규정이 삭제된 조달법 시행

태국은 지난 25년간 중앙정부의 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로 사용되어 오던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The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B.E. 2535(1992)」(이하 「조달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8월 23일부터 새로운 법인 「정부조달 및 공급 관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nd Supplies Management Act, B.E. 2560(2017)」(이하 「조달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달법」에 따르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기관, 독립기구 등 전국 9,000개의 기관에서 정부조달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법」에서는 민간 기관으로부터의 조달관련 뇌물수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뇌물 수여자와 수혜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조달법」의 특이 사항으로는 과거 「조달 규정」제16조를 통하여 태국산 제품 및 태국인 사업 육성 진흥에 관한 내용을 두어 정부조달시 태국 입찰 참가자에게 외국 입찰 참가자에 비해 일정부분의 입찰 가격 혜택을 부여하던 일명 ‘Buy Thai’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조달법」에서는 발주처의 자율성을 허용하여 외국산 또는 자국산 조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주처가 자국산 구매를 우선시할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다 할지라도 태국표준공업규격(TIS: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인증을 득한 제품일 경우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태국은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인 지식재산권기구(WIT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07~2017년 동안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어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 압력을 받고 있다. 2016년에는 USTR이 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정부관계 부처와의 협업 부재 등의 이유로 10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태국을 포함하였다. 2017년에도 USTR은 태국 내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제품 유통,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원작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 수정 게재 시 제재 수단 미비 등을 이유로 태국을 11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하였다.

최근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음반·CD·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지재권 인식이 매우 낮아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8월 7일 상표권과 관련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발효는 2017년 11월 7일)하여 현재 5개 국제기구 및 조약⁴³⁾에 가입되어 있으며, 디자인과 관련해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태국은 ‘국가별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서 태국 현지인이 동종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로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표무단선등록 피해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상표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43) 태국이 가입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은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마드리드 협정(Madrid Protocol)이다.

독점규제

태국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042(1999))」을 폐지하고 2017년에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60(2017))」(이하 「신 경쟁법」)을 발효하였다.

「신 경쟁법」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독립기구인 ‘경쟁위원회실(Office of the Trade Competition Commission)’을 설립하였으며, 경쟁위원회실에서 불공정거래 판정, 경쟁관련 대 내각 의제 상정,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 경쟁법」에서는 합병 시 경쟁위원회실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합병 후 7일 이내에 경쟁위원회실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구 경쟁법에서는 사전승인 조항만 있었음).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의 범위가 명확해져 가격 담합, 수량 제한 등 불공정 규정 설정, 담합 입찰, 배타적 판매구역 설정 등이 불공정 경쟁의 범주에 포함 되었다. 「신 경쟁법」에서는 과거 민사 및 형사처벌 규정에 더하여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규제

태국은 2002~2016년 12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총 9건의 반덤핑 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2건은 조사 종료되었으며, 1건은 조사중이다. 특히 태국의 대한민국 반덤핑 조사가 2010년대에 들어 7건이나 이루어지는 등 최근 태국이 보호주의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7년 12월 현재 태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6건 모두가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건(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재압연용 열연강판, 도색 아연도금강판, 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 강관)이다. 기존 4건에 추가로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해 CIF의 51.53%(단, 세아제강의 경우 CIF의 11.96%의 반덤핑 관세율 적용)의 반덤핑 관세율이 신규 적용되었으며, 2017년 7월 20일부터 5년간 한국산 강관에 대해서도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3.49~53.88%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그 외에 2016년 9월 14일 한국, 중국 및 대만산 아연도금강판(Galvanized flat sheet in coil and not in coil)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최종판정이 나지 않았다.

세이프가드 조치

2017년 12월 현재, 태국은 한국과 관련하여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였고, 이 중 2건(합금 열연강판,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중이며, 3건은 조사 종료되었다. 태국은 유리블록에 대해 2011년 8월 18일부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4년 1월 15일부터 이를 3년 연장하였으나, 2017년 1월 14일자로 규제 종료되었다. 그리고 합금열연강판에 대해 2013년 9월 13일부터 세이프가드 관세를 발효하였으며,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3년 연장 조치(적용관세율(CIF 가격 기준): 1년차 41.67%, 2년차 40.42%, 3년차 39.21%)가 2016년 2월 26일 발효되었다. 또한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7일부터 3년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적용관세율(CIF 가격 기준): 1년차 21.92%, 2년차 21.52%, 3년차 21.13%)를 발효하였으며,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3년 연장 조치 (적용관세율(CIF 가격 기준): 1년차 21.00%, 2년차 20.87%, 3년차 20.74%)가 2017년 6월 6일 발효되었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은 자국 철강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이프가드 규제가 3년 동안 발효된 후 다시 3년 동안 연장되고 있어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강제인증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전자용품, 플라스틱 등 10개 분야 116개 품목(2017년 10월 기준)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으로부터 강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⁴⁴⁾

강제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 및 샘플 테스트, 현지 공장 검사(해외 공장의 경우 3년에 1회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외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절차의 실제 소요기간이 기준보다 긴 경우가 많아 인증이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서비스·투자

외국인 투자 제한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에 의거,

44) 강제인증 품목조회는 TISI의 홈페이지(http://app.tisi.go.th/standard/comp_eng.html) 참고.

외국인 투자를 List One, List Two, List Three의 3가지로 분류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List One은 9개의 업종(신문방송사업, 쌀·작물 경작,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 약재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또는 문화재의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및 승려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을 포함하며, 외국인의 50% 이상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단,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List Two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미만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이며, 내각이 승인하고 상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가 60%(또는 75%)까지 가능하다. 동 목록에 포함되는 산업은 국가안보 등 16개 업종이며, 세부 업종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직조/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 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List Three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한도가 50% 미만으로 제한되나,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태국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받는 경우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동 목록은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태국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1개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 목록에는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 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브로커, 에이전트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경매업(별도 예외조항 존재), 국내무역, 소매업(총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도매업(점포 당 자본금 1억 바트 이하), 광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금지에 있어 크게 2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로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으며(「외국인사업법」 제10조, 태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음), 둘째로 List Two, List Three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투자촉진업종이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사업법」 제12조).

인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2000년대 들어 한·인도 상품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단, 2009년 제외)하여 2011년 최대 규모인 20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 양국간 상품무역액은 157억 달러로,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액은 각각 116.0억 달러와 41.9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74.1억 달러 흑자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11.2%), 무선통신기기(9.7%), 자동차부품(8.2%), 합성수지(7.8%), 석유제품(3.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23.5%), 알루미늄(12.1%), 정밀화학원료(5.1%), 합금철선철및고철(4.3%), 식물성물질(4.2%) 등이다.

한·인도 투자관계를 보면 인도의 대한민국 투자는 1962~2017년 9월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이 5.4억 달러로 미미한 반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1968~2017년 9월까지의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이 46.4억 달러(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1.2%를 차지)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1968~2017년 9월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대인도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82.9%)으로 특히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40.0%)과 1차금속제조업(20.4%), 전기장비제조업(5.3%) 등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5.9%)과 건설업(2.2%)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한·인도간 CEPA는 2010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2017년 현재 RCEP 협상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전매, 제한품목의 지정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 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이며,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을 포함하고,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뭍바이 세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자동차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야 한다(1,000~2,500cc 중고차량은 전면 수입 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모터사이클은 250~800cc인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인도의 통관시스템은 현대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류상 단순 기재오류 등 작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며,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행정절차가 항상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Invoice 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밖에도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행정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수출품에 대해 구매자가 구매거부 시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재반출이 가능한데, 구매자가 NOC 작성을 미루고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용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려 초과정박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이외 세관 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항공 화물 통관 지연

일반적으로 각종 기계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미보유한 AS 부품에 대해서 수입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도 각종 사유로 인해 항공화물 통관이 지연된다.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거나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허용된 72시간 이내에 통관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2017년 6월말 현재 248건의 반덤핑 조치와 80건의 반덤핑 조사 등 총 32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어, 미국의 324건을 초과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 28건, 세이프 가드 3건 등 총 31건이며, 이 중 반덤핑 3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 화학 18건, 철강 및 금속 8건, 섬유제품 3건, 기타 2건에 대해 수입규제가 이뤄졌으며, 이중 PVC페이스트 수지, 에틸헥사놀, 페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NBR고무, 인산, 가성소다, 탄산칼륨,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아크릴 섬유, 고순도 테레프탈산, 아세톤, 질산나트륨, 고무류, 알루미늄휠, 염화메탄, 무수프탈산, 나일론사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디옥프탈레이트, 폴리부타디엔 고무, TDI(Toluene Di Isocyanate)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인도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내 철강기업들이 2010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한 뒤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인도기업들은 중국, 일본,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2015년에 열연코일과 열연후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6년 들어 냉연강판(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과 열연후판 및 냉연강판(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확정 부과하였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나라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충분히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투명성의 부족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긴급수입제한

인도는 2017년 12월 현재 총 3건의 세이프가드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우리나라 관련 품목으로 구연산나트륨, 열연코일, 열연후판이 적용대상 품목이다. 현재 조사 중인 세이프가드 품목은 없다.

▶ 인도의 대한민국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현황

상품명	최종판정일	조치이후 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구연산나트륨	2014.9.16	55%	50%	40%
열연코일	2016.3.15	20%	15%(초반) 18%(후반)	10%
열연후판	2016.8.2	10%	8%	6%

타이어 인증제도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표준국(BI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규격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이외에도 ISI 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표준국의 인증방침(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증마크 수수료, 해외 공장에 대한 은행보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뿐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도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제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철회 및 인도 수출용 ISI 각인 타이어에만 부과해 줄 것과 공장별 은행보증료(미화 1만 달러)를 인도내 공장에도 부과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계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도측에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측은 우리 의견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우리 업계는 동 규제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중이다.

한편,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및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절차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HS Code 4012.11.00-4012.20.20에 해당하는 중고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화장품 등록 절차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은 2013년 4월부터 중앙약품표준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대인도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1회 등록시 약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한다. CDSCO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전자 및 IT제품 의무 등록 요건

인도는 「전자와 정보기술상품 명령, 2012(Electronics and IT Goods Order, 2012)」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이는 모든 통보된 제품이 인도 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사람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규제는 IND/47로 통보되었던 인도 전기전자 및 IT 제품에 적용되는 BIS 의무등록제도이다.

인도는 2015년 9월 1일 발표된 BIS 의무등록제도 관련 시리즈 인증 가이드라인 개정 4본에 따라 2차 전지와 고정형 LED 전구에 한하여 시리즈 모델 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전지는 시리즈 당 최대 허용 모델 수가 20개이며, 고정형 LED 전구는 50개로 제한된다.

2차 전지(IS 16046)의 경우 BIS 표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현지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해야하며, BIS 당국에 제품등록 후 BIS 승인번호를 포함하는 라벨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WTO TBT 정례회의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2차 전지 시험소로 지정된 곳 중 1곳의 자격 정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2차 전지 시험 및 인증에 큰 애로가 있음을 밝히고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였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인도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6개 품목(IT 기기용 파워 어댑터, 오디오/비디오용 파워 어댑터, UPS, LED 모듈, 2차 전지, 고정형 LED 전구 등)에 한하여 6개월을 유예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차 전지 시험소도 2016년 말 현재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WTO TBT 위원회 회의에서 인도가 2차 전지의 IECEE CB 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미국, 유럽 등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철강제품

2012년 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⁴⁵⁾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국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45)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0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어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15년 6월 17일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장강(long steel), 평강(flat steel) 등 일부 철강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2.5% 인상한데 이어, 불과 2달 뒤인 2015년 8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재인상한 상태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세금 관련 규제

인도는 법인세율, 소득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수익을 내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 한편 인도 정부는 외국기업이 자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인도에서 받고 있는 각종 지원(주택 임차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어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의 법인세율은 자국기업 30%, 외국기업 40%로 차별적이며, 소득세율은 30.9%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높은 조세율 이외에도 복잡한 조세체계 및 납부방식, 세금 환급의 어려움, 불필요한 행정 처리, 빈번한 세법 및 관행 변경, 조세 당국의 고압적 자세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수출 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 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HTPs: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및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s) 입주 기업, 100% 수출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s) 및 수출가공구역(EPZ) 입주 기업, 특별경제구역(SEZ) 입주업체 등이 있다.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은행 서비스업 규제

2016년 11월 초 현재 46개의 외국계 은행이 300개 이상의 지점 설립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 등 세 개의 은행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일부 대형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 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뉴델리, 아마다바드, 뭄바이, 푸네, 랑가레디, 칸치푸람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년 4월 첸나이, 2016년 하반기에는 구르가온과 뭄바이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여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과 KEB 하나은행도 뉴델리와 첸나이에 각각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며, 수출입은행은 뉴델리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OS: wholly owned subsidiary)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인도 중앙은행(RBI)은 국내 금융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해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자동승인제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복권, 도박, 전통 소매금융, 부동산 개발, 담배 및 담배 대용품, 원자력에너지, 철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개방되어 있다. 인도 정부는 2014년 모디정부 수립 이후 제조업 부흥책인 Made in India 캠페인 전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FDI 규제 철폐 및 완화 등 FDI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8월 인도 산업정책진흥부(DII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의 발표에 따르면 FDI를 위해 필요한 승인절차 중 정부승인이 필요한 FDI가 크게 축소되었다. 외국인이 인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인도 정부는 방산·유통 등 민감한 산업분야의 경우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로부터 정부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외한 산업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하는 자동승인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2017년 인도 정부는 FIPB를 폐지하고 정부승인을 각 해당산업의 주관 부처에 맡김에 따라 기존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승인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8월 현재 인도에서 정부승인이 요구되는 분야는 티타늄 광업, 신문, 방송, 출판, 지상파방송, 인공위성, 멀티 브랜드 소매업, 공공은행 등에 대한 FDI와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하는 방위산업, 항공운송, 개인 경비, 통신, 단일 브랜드 소매업, 민간은행 등이다.

러시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한국과 러시아의 상품 무역은 1992년 1.9억 달러에서 2011년 수교 이후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4년에는 25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대러시아 수출입이 각각 101.2억 달러와 156.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상품 무역이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상품 무역액은 134.1억 달러(대러시아 수출입이 각각 47.7억 달러와 86.4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38.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2016년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19.9%), 자동차부품(15.3%), 합성수지(4.5%), 플라스틱 제품(2.7%), 고무제품(2.6%)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22.6%), 석유제품(21.9%), 석탄(20.0%), 천연가스(6.7%), 합금철선철및고철(4.3%) 등이다.

한러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많고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미미하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투자금액 기준)는 1968~2017년 9월 누적금액이 25.8억 달러이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은 5.8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42.1%), 도매 및 소매업(27.3%), 금융 및 보험업(10.3%), 농업, 임업 및 어업(8.7%), 건설업(4.8%) 등이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기준)는 1962~2017년 9월 누적금액이 64.1백만 달러에 불과하며,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투자금액도 16.1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수입 규제

폐차세(Utilization Fee)

2012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중고차에 대해 폐차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폐차세는 차량의 폐차 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징수하는 일종의 환경분담금 성격의 세금이지만, 제도의 도입 당시 러시아 정부는 수입차에 대해서만 이를 부과하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세를 면제(단, 생산업체에게 폐차 책임의 의무만을 형식적으로 요구)하여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및 외국업체의 현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폐차세 부과를 추진할 당시부터 EU는 동 제도가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 2013년 9월 EU는 WTO에 동 법안을 제소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산업과 소비 폐기물 처리법」 24.1조항의 수정을 통해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과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 모두에 폐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3년 12월 16일 정부훈령으로 승인된 법안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600~1,500달러, 화물차의 경우 5,000~13,3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며, 부과세금은 차종별 책정된 기본 부과금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만들어진 부담금 지수를 곱해서 구해진다. 한편, 2016년 2월 10일 러시아 정부는 폐차세의 부과 범위를 농업기계, 건설중장비 등으로 확대한 「러시아 연방정부법령(No.81)」 ‘자주식 기계 및 트레일러에 대한 폐차세’를 공포·시행하였다.

통관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러시아 「관세법」 체제 하에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관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중개인 요청 우선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으로 한 달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수많은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데,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100%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을 경우 통관이 안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세관은 수출자가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여 세관의 자체적인 기준가(guide line)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HS코드 기준으로 동일 제품이더라도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원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잦은 검사로 통관이 지연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를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 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하여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러시아 세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invoice)과 한국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세관이 정한 임의의 가격으로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통관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 통관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러시아 「관세법」 제155조에 따르면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직접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비밀스러운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반입을 지연 시키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판매용 물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575조의 “3,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구매자에게 보내는 샘플에 대해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2012년 7월 1일부로 “경공업 제품 안전에 대한 기술규정”을 발효하였다. 해당 기술규정은 EAEU에 속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에서 적용되는 단일 인증으로, 본 기술규정에 의거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경공업 제품은 용기, 라벨 등에 EAC 마크를 부착한 후 EAEU 5개국으로 진출 및 유통이 가능하다. 해당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은 섬유제품, 의류, 카펫, 가죽제품, 펠트, 신발 등이며, 중고제품, 주문제작 제품, 의료용 제품, 개인보호 제품, 공예 제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각 국가별 인증제도가 EAEU 인증 제도로 개편되고 있는 바, 아직 EAEU 인증제도로 편입되지 않은 품목은 국가별 인증이 유효하다.

담배의 경우 2015년 11월 12일에 담배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이 채택되고 2016년 5월 15일 시행되어 유라시아 지역에 담배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선 본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EAEU의 「담배 제품 기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제품에 니코틴 함유량이 0.1mg/cig

까지만 허용되며, 담뱃갑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제조사나 수입업자의 주소, 중량, 담배 개수, 필터 존재 여부, 제조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담배 포장지에 건강 피해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해당 담배가 다른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는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담배 생산 ID(Identification)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 방법(샘플링 등)이 먼저 결정되며, 기술 규정 검사는 해당 주에서 감독한다.

CU(Customs Union)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19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기스스탄(2015년 8월)의 관세동맹 가입으로 현재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났고, 관세동맹 기술 규정에 의해 하나의 CU 인증서로 5개국 통관이 가능하다. 2015년 12월 기계장비, 장난감, 화장품 등 약 66개 품목(세부규격 약 8천여 개)이 관세동맹(CU) 인증으로 통합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인증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난립(인증기관 948개, 시험대행기관 2,254개)으로 인한 부실 인증 서비스, 과도한 인증비용 지출 등 피해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7년 12월말 기준 EAEU 역내에서 35개의 기술규정이 시행중이다. 대상 제품군은 철도 차량, 고속철도 차량, 철도 수송 인프라, 저전압 장비류, 포장제품류, 불꽃 제품류, 아동용품,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류, 기계 및 장비류, 엘리베이터, 가솔린과 연료(자동차, 항공, 디젤 엔진, 선박용 등), 도로, 곡물, 경공업 제품류, 차륜차량, 전자기 적합성, 식품류, 과즙과

채소 주스, 유지가공식품류, 가구류, 소형 보트, 치료식품 포함 특수 식품류, 폭발물, 식품 첨가물, 조미료, 식품 가공 보조제, 윤활제, 농업 및 임업 트랙터 및 트레일러, 고압 장비류, 우유 및 유제품류, 육류 및 육류 제품류, 담배 제품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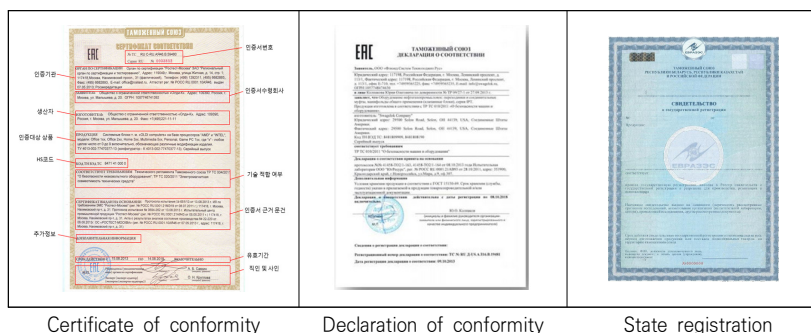
CU(EAC)인증의 경우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5개국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3가지로 분류된다. GOST-R 인증서류는 유효기간이 제품군별로 다르고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CU(EAC) 인증서류로 교체되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담배 제품류 CU 안전 기술 규제에 따라 2015년 5월 15일 이전의 GOST-R 인증서류는 2017년 11월 15일까지 유효했다. 현재 러시아의 GOST-R인증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에는 적합성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만약 제품이 CU 기술 규제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GOST-R 인증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 EAEU 회원국별 인증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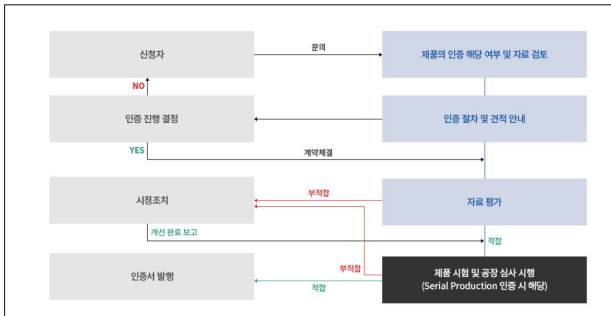
구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합계
인증기관	14	56	86	15	1,085	1,265
시험기관	27	434	303	37	1,951	2,752

자료: EEC

〈CU인증 샘플〉



〈CU 인증 절차도〉



정부조달

공공조달시장의 차별

러시아 정부는 정부조달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외국산 제품 중에서 러시아 연방법(No.94)에서 정한 품목은 최종 낙찰 가격보다 15% 낮은 금액에 공급하는 법령을 2011년 시행하였고, 2012년 3월 러시아가 WTO 가입 이후 대폭 관세율이 낮아질 돼지고기, 농기계 및 장비, 종이류를 추가 하였고 위의 연방법을 연장하기로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표하였다. 그 후 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 2014년 3월 25일 발표한 공공조달시장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온 수입품 중 경제개발부 명령(No.155)에서 정한 품목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종 낙찰 가격에서 15%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법령들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차별을 만들고 있다.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보호와 자국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 엔지니어링 및 경공업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법령을 발표한 것에 이어

2015년에는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도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동맹(EAEU) 가입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외국에서 생산된 건설용 차량 및 부품, 차량 등 총 42종에 대해 러시아 연방 및 지방정부의 조달 구매가 금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된 섬유류(6종), 의류(7종), 신발류(3종) 등도 정부조달 구매가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외국산 의료용 직물, 의료장비, 각종 검사키트 등 총 45종,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16종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품목에 대한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어렵게 되어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2016년 러시아는 자국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한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의향을 공식 통보하였으나, 2017년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아직 가입을 기다리는 과정이며, 2017년 2월 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도 본 협정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 및 심의를 통해 중앙정부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이 러시아의 수입품 교체 정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EA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산업통상부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9	외국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정통부
2017.2	국방 및 보안 제품 제한 법령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2016년 기준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6위의 수입대상국이며, 교역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의 교역대상국이다. 2016년 한국의 대호주 상품교역액은 226.8억 달러, 수출은 75.0억 달러, 수입은 151.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6.8억 달러 적자이다. 2016년 한국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36.9%), 자동차(26.8%), 자동차부품(2.2%), 레일및철구조물(1.8%), 영상기기(1.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26.9%), 철광(18.7%), 천연가스(11.7%), 육류(7.8%), 알루미늄(5.4%) 등 자원과 농산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간의 투자관계를 보면 한국의 대호주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68~2017년 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투자금액 기준) 누적금액은 127.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호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한국의 대호주 투자(투자금액)는 총 65.5억 달러(같은 기간 전체 해외투자에서 4.2%를 차지)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72.2%), 부동산업 및 임대업(18.7%), 금융 및 보험업(4.9%), 제조업(1.7%), 도매 및 소매업(1.2%) 등이다. 한편 1962~2017년 9월 호주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누적금액은 9.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이다.

한·호주 FTA는 2014년 4월 공식 서명되었고, 2014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그 외에 양국은 RCEP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2015년 10월 5일 타결된 TPP의 12개 회원국(미국탈퇴 선언으로 현재는 11개국) 중 하나이다.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기술장벽이나 여타 수입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 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식품검역제도

호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이하 SPS) 적용 협정 가입국으로서 농업 및 수자원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SPS 조치는 과학적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조사결과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de)」을 충족해야 하며, 1999.6월부터 수입농축산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ed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를 소요하기도 한다. 호주정부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SPS 조치들을 WTO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외국의 수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송,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육가공제품의 경우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금지한 바 있고, 한국산 배 수입 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우대조치

호주의 정부조달 시장은 연간 약 40조 원대로 추정되며, 해외구매도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 기업의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호주정부는 정부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정부조달 시장을 현지법인이 없는 해외법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등 각 부처가 정한 사전 요건⁴⁶⁾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외국 업체의 주정부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가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호주 FTA에서는 정부조달 분야를 상호 양허하였고,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비차별, 조달절차 투명성 등에 관한 규범을 규정한 별도 챕터를 두고 있다. 아울러,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하여 우리나라 등 기존 정부조달협정 가입국들과 자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위한 양허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 분야에서는 호주측으로부터 한·호주 FTA보다 양허수준의 확대 또는 양허조건의 완화 등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6) 호주 연방부처들은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의거, 조달시장에 입찰하기 위한 사전 요건으로 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요건들을 만족한 기업들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제소 및 관세 부과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서 분리·설립하였다. 더불어 호주 정부는 주재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호주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⁴⁷⁾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반덤핑 등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총 18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26개 품목(총 20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18건은 반덤핑 조사 6건(11개국), 덤핑관세부가 연장여부 조사 2건(5개국), 덤핑 재검토 및 취소여부 조사 6건(4개국), 재조사 1건(3개국), 면제 조사 3건(6개국)이다. 이는 2017년 1월 대비 조사 중인 품목은 2개가 감소(20건 → 18건)한 반면,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부과 품목은 2개 품목이 증가(24개 → 26개)한 수치이다. 품목 별로는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26건) 중 16건(전체 대비 62%)이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조사가 진행 중인 4건⁴⁸⁾(2017년 1월 대비 1건 감소),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47)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산업장관은 2016.9월 호주 반덤핑 제도가 자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다.

48) 선재(반덤핑), 열연코일(반덤핑연장), 철강재 파이프(반덤핑 재검토), 아연도금강판(면제)

있는 8개 품목⁴⁹⁾(2017년 1월 대비 변동없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가 진행 중인 4건 모두가 철강제품이며, 반덤핑 및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 중인 8개 품목 중 7개(88%)가 철강 제품이다.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의 경우에는 대호주 수출시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품목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49) 철강재 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열연구조섹션(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Steel), 풍력타워(Wind Tower)

브라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과 브라질 간 교역규모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의 대브라질 상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상품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국과 브라질 간 상품 교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감소(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 2015년 96억 달러, 2016년 79억 달러)하였다. 이는 브라질 경기 침체 및 헤알화 급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 (IPI)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 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브라질의 상품 교역규모는 2016년 기준 79.0억 달러(수출 44.6억 달러, 수입 34.4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10.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14.9%), 반도체(12.9%), 자동차부품(11.6%), 자동차(4.5%), 원동기및펌프(4.4%)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식물성물질(28.8%), 철광(19.2%), 곡실류(8.1%), 기호식품(7.1%), 기타농산물(5.6%) 등 1차 상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이 공식 출범된 후 브라질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1968~2017년 9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누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77.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투자금액)가 총 28.7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주로 제조업(60.1%), 광업(15.0%), 운수업(8.0%), 도매 및 소매업(6.0%), 건설업(5.2%)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제강 등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생산업체인 하나마이크론 등 중견기업도 현지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기업의 현지투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 및 국내 세금을 부과하고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62~2017년 9월 브라질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누적금액은 11.0백만 달러로 미미하다.

수입규제

수입허가제도

(1) 자동발급 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e)

브라질에서 수입신고 시 사전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외의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품목이 수입허가 자동발급 대상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생이나 환경 관련품 등 일부 제품은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목에 속하더라도 통관 전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허가 요망 품목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

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천연고무나 인조고무 외에도 유관기관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등이 있다.

(2) 자동발급 불가 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e)

수입허가 자동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은 선적 전이나 수입신고 시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인간 및 동식물에 위해하거나 환경파괴를 야기 시키는 품목, 수입쿼터나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무기류 등이 이에 속한다.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열거 되어있으며, Drawback, BEFI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 및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통상개발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사전허가 발급기관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두 종류의 허가증은 모두 90일 동안 유효하며 16개 기관을 통하여 SISCOMEX에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 60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통관

화물검사 통관 지연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반입품을 녹색(자동 통관), 황색(서류심사 필요), 적색(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회색(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 등 4가지 채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2012년 진행된 'Operacao Mare Vermelha'로 불리는 화물검사 강화조치 정책 이후부터 강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한 배경은 통관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뇌물요구를 근절하고 브라질내로 반입되는 화물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반입품의 채널 배정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반입품에 대하여 48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채널 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는 180일까지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 'Operacao Mare Vermelha'는 공식적으로 2013년 초에 종료된 상태이지만, 다수의 업체들은 여전히 통관 지연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브라질 연방세무국이 지속적으로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새로운 통관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추후에도 정부차원의 통관강화 정책이 사전예고 없이 발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브라질의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는 공인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사는 업체로부터 변호사가 공증한 통관업무 위임장을 받아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제표준 불인정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표준

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브라질은 2009~2013년 동안 782개의 표준과 359개의 기술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그 중 53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립계량품질원(INMETRO)의 강제인증

국립계량품질원은 산업무역서비스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이며, 인증 종류에 따라 OCS(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외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INMETRO와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브라질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즉, 한국 주요 수출 품목군인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성 등 주요 시험항목들은 국내 기관을 통한 인정이 가능하지만, 인정이 불가능한 일부 분야(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서는 브라질 역내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거쳐서 진행해야한다.

강제인증은 제작·유통·사용 과정에서 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제품, 유아용품(장난감, 젖병, 카시트, 등), 안전용품(소화기, 절연장갑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년 150개, 2016년 155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⁵⁰⁾ 우리기업 제품도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브라질에는 제품군별로 수십여 가지의 법령이 존재하며 법령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각 품목별 법령의 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상업용이나 가정용과 관계없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강제 규제된다.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③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가 지정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제조자들이 직접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선언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법령 제371조」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법령 제170조」에 의해 규제된다. 특히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는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정부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 LED 램프 등이 있다.

50)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유무선통신 인증

브라질은 「Resolution 242/20」에 따라 통신제품에 대해 반드시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인증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⁵¹⁾로 나뉘어져 있으며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은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수행가능하다.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서만 수행가능하다.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경쟁정책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브라질은 2010년 Lula 정부시절부터 암염하층(pre-salt) 등 석유개발시 최대 90%까지 자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석유 및 조선 기업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 정책은 브라질 시장 내 경쟁감소로 인해 R&D 투자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오히려 자국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브라질 석유 및 조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현 Temer 정부는 동 규정을 육상(on-shore)의 경우 약 50%, 해상

51) Category I :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 단말기 등 (PSTN에 접속되는 유무선 기기 해당)

Category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 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Category III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 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Router)

(off-shore)인 경우 약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기업의 자국투자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지기업과의 공조 없이 외국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 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기업 외에는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문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 규제

환경오염방지법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2004년 12월에 통과되어 2005년 1월 공포된 「법률(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브라질은 환경부 및 산하 환경위생기술청(CETESB)이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무역규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2017년 10월말 기준,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10개로 PVC(염화비닐수지), 철강 3개 품목(실리콘강판, 후판, 냉연

강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폴리프로필렌 수지, 버스트릭용 타이어, 페라이트 자석, PVC 코팅 직물 등이 이에 해당되며, 현재 조사 중인 품목은 니트릴 고무로 1개가 있다.

브라질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덤핑조사 신청을 조사개시일 기준으로 보면 총 23건 중 17건이 2010년대, 특히 2013~2014년에 들어서 이루어졌으며, 이중 7건(화학공업제품 3건, 철강금속제품 2건, 섬유제품 2건)은 무혐의 판정 등으로 조사가 종료된 바 있다.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1건으로 최근 브라질의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양국간 교역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향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현지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현지직원 고용 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총합의 2/3를 브라질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나머지 1/3은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명의 본사직원(외국인) 파견 시 2/3에 해당하는 2명을 현지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지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지만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무관리의 어려움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운 점이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현지직원 1명 고용할 경우 급여 외에 각종 사회보장제, 연금, 소득세, 상여금, 휴가비, 정기급여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고 시에도 퇴직벌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하여 늘 제소될 위험이 있다.

또한 브라질의 「노동법」은 노동자와 약자 위주로 제정되어 제소될 경우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 승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비용(인지대 등)은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브라질의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패소할 경우에도 노동자에게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노동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은 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2017년 7월)된 노동법에 따르면, 성과급, 휴가 등 일정 분야에 있어서는 노사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되는 등 노사협약의 법적지위가 높아졌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노동자)가 패소한 경우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되었다.

보험 서비스업 규제

브라질은 남미 최대 보험시장으로 동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며 브라질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수의 브로커가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Direct Marketing 도입 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캐나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캐나다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및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다. 한국과 캐나다간 상품무역은 2011년 최대 규모인 115.4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2~14년 동안 연간 100억 달러 내외의 정체 상태를 보이다 2015년 86.1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2016년은 소폭 상승하여 88.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상품 수출은 48.8억 달러이며, 수입은 39.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4억 달러 흑자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39.1%), 레일및철구조물(14.8%), 자동차부품(4.4%), 무선통신기기(4.3%), 원동기및펌프(3.0%)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16.9%), 동광(14.0%), 제지원료(6.0%), 알루미늄(5.6%), 목재류(5.1%) 등 자원이 중심을 이룬다.

1962~2017년 9월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기준) 누적금액은 총 34.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는 총 16.0억 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73.4%), 식품(8.5%), 비즈니스 서비스업(7.1%), 부동산·임대(3.8%), 섬유·직물·의류(2.7%) 등이다. 캐나다의 연기금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우량기업 M&A 또는 지분인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몰타,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투자로 인해 상당부분이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1968~2017년 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투자금액) 누적금액은 105.7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에서 2.7%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3~2017년 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투자금액)는 총 33.0억 달러가 시행되었으며, 주로 광업

(70.7%), 금융 및 보험업(9.7%), 제조업(5.2%), 부동산업 및 임대업(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은 2014년 9월 타결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통관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최근 수년간 캐나다에서 농수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 과실류에 대한 통관검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젓갈 등 어류 품목에 대한 통관불허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CFI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경우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실제 2012년 5월 CFIA가 한국산 냉동 굴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입불허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FDA가 해당 한국업체에게 적용한 수입불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캐나다 인증취득 제도

캐나다는 기계, 전자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부품, 소재 등에 광범위하게 표준인증(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도 통용되기는 하나, 대다수 상품에 CS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SA 인증은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민간자율제도에 해당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에너지, 전자전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CSA 인증 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 법률에 의해 채택되고 있으며, 해당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유통 규정 관련 제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식품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무게,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기(Labelling)해야 하며, 알레르겐(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물질)과 인공색소 등의 함유 여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스, 장류 등 상대적으로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품의 특성상, 특수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수입금지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캐나다는 1992년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에 「최저 에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도입하였다. 대상제품에 대한 MEPS 적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명기기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 품목은 의류건조기, 의류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전기온수기, 형광등 등을 포함하여 총 47종의 전기전자제품이 해당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16년 5월에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와 캐나다·미국 양국간 에너지 규제 조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내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가정용 및 상업용 전자제품과 에너지사용 제품들의 에너지효율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2016년에 20개 제품군에 대해 적용하며, 2017년 15개 제품군, 2018년 20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규제안 통과후 발효시점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과 캐나다 내에 유통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규제안을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미국 에너지효율 규제와 조화를 강화함으로써 캐나다-미국간 무역장벽 및 규제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대상 주요 품목은 가정용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실내 에어컨, 중앙냉난방기, 기름연소 저장 온수기, 상업용 냉장시설, 냉장음료 자동판매기, 전기모터, 오일·가스 용광로, 전자레인지, 충전기 등으로 아래와 같다.

- clothes dryers
-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5 and 2018)
- integrated washer-dryers
- dishwashers
- freezers
- refrigerators
- room air conditioners
- centr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oil-fired storage water heaters
-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chillers

- commercial refrigeration (self-contained)
- refrigerated beverage vending machines
- commercial ice-makers
- electric motors
- residential-style commercial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3 and 2018)
- fluorescent lamp ballasts
- general service fluorescent lamps (two U.S. standards: 2012 and 2018)
- general service incandescent reflector lamps
- residential gas-fired storage water heater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의무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 안전 강화 프로그램(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을 제정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HACCP은 식품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 및 권고되는 수단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캐나다는 육류, 가금류 및 어류에 대해서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이 없는 업체와의 상담은 무의미하다고 바이어들이 전할정도로 HACCP 인증이 캐나다 시장진출에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식품 안전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식품 교역에서의 HACCP 적용요구는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식품 라벨링 및 수입기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언어로 라벨링 표기를 모두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장 단위인 Inner Box에는 성분표(Ingredients)와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표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재료 중 많이 포함된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이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인 알레르겐(Egg, Milk, Mustard, Peanuts, Seafood, Sesame, Soy, Sulphites, Tree Nuts, Wheat 등)이 함유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리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 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또한 식품 종류별로 허용되는 첨가제가 다르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자황색소(gardenia yellow) 등은 캐나다에서 금지되는 등 첨가제 기준이 국내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CFIA 홈페이지 (www.inspection.gc.ca)에서 캐나다 식품수입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 육류나 유제품, 달걀 등은 수입이 제한되는 등 식품 종류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이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식품별로 수입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등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 수출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입규제 절차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및 「동법 시행령(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국제무역 재판소 규칙(CITT Rules)」 등에 근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이 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산업피해조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업체가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면, CBSA는 해당 국가 전체 기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국내 공장도가격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조사하여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여 덤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수출업체는 “all other exporters”로 분류되어 최고의 덤핑 마진율이 부과된다. 덤핑 마진율의 최소허용한도(de minimis)는 2%로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반덤핑 규제가 적용되며, CBSA는 규제 대상 업체들에게 품목별 정상가격을 부여하고, 향후 수출시 정상가격 보다 수출가격이 낮은 경우는 그 차액만큼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CITT 위원들(위원장 1명, 위원 6명)은 총리가 임명하며 예비판정 및 본판정에는 3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판정을 내리게 된다. CITT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 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CITT가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①수입물량, ②가격변동, ③국내산업 피해 여부, ④인과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피해판정 시 현재까지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피해 가능성도 검토하며 수출국의 생산능력 및 잉여 생산능력, 수출의존도, 다른 수출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할 정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

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체의 피해를 합산(cross-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를 산정할 때 다른 요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

캐나다는 덤핑마진율의 결정 및 산업피해 판정 후, 기업별 및 품목별 정상가격을 별도로 계산해 해당품목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이 크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는 비용 부담, 기업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정상가격 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시장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국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는 품목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업체는 정상가격을 책정 받지 못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 받는 경향이 있어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제품경쟁력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산 철구조 부분품에 대해 2.4%~45.8%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2017년 CITT는 산업피해 최종 판정을 내려 규제가 확정되었다.

2017년 7월 5일에는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재조사에 대한 판정결과가 나왔으며, 9.1%~101%의 반덤핑 관세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7년 7월 28일에는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심사가 개시되었으며, 2017년 12월에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2017년 9월에는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재조사에 대한 판정결과가 나왔으며, 13.3%~41%의 반덤핑 관세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7년 6월 한국산 탄소 합금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에 내린 예비판정 결과, 4.7%~107.2%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책정되었으며, 최종판정은 12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2017년 10월말 현재 캐나다가 한국산 상품에 대해 시행 중인 반덤핑 수입규제는 총 9건이며 1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이 9건, 기타 품목(유입식 변압기)이 1건이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상계조치 여부도 검토했으나 조사 결과 한국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경미하여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

-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HS 7306)
 - 가스 배관, 철골 구조 등에 사용
 - 2003년 12월: 최종 판정에서 8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3년 12월: 일몰재심결과 위와 같은 판정 유지 결정
-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HS 7412)
 - 열기기 및 배관, 공조, 냉동기기 등에 사용
 - 2007년 2월: 242%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6년 2월: 재조사 결과 자료 제출 기업에는 하향 조정, 미제출 기업에는 242% 부과 판정 유지 결정
-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S 8504)
 - 출력 전압을 승압 또는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 2012년 11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4년 3월부터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
 - 2017년 7월: 재조사에 따른 최종 판정도 동일하게 유지
 - 2017년 7월: 종료심사 개시(12월 CBSA 본판정 예정)

-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 HS 7306)
 - 산업 배관 등에 사용
 - 2012년 12월: 54.2%의 반덤핑 관세 부과(이듬해 수출액 크게 감소)
- 동관(Copper Tube, HS 7411)
 - 배관, 난방, 천연가스관 등에 사용
 - 2013년 12월: 최고 82.4%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5년 1월: 재조사 결과 동일 유지 결정
- 열연강판(Hot-rolled Carbon Steel Plate VII, HS 7280)
 - 선박, 교량, 컨테이너 제조 등에 사용
 - 2014년 5월: 최고 59.7%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콘크리트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HS 7213/14/15/27)
 -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시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에 의한 파손과 파열을 방지하는데 사용
 - 2015년 1월: 최고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2017년 9월: 재심결과 한국, 중국, 터키 등 3개국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 HS 7304/06)
 - 원유, 천연가스의 채취, 가스정의 굴착 등에 사용
 - 2015년 4월: 최고 37.4%의 관세율 부과
- 철구조 부분품(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HS 7216/7301/7308/7326/8421/8428)
 - 오일 및 가스 추출, 수송, 가공 등에 사용
 - 2017년 5월: 한국,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에 최대 45.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

-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HS 7216/7301/7308)
 -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송유관, 중력 배수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
 - 2017년 9월: 반덤핑 예비판정(4.7~107.2%의 잠정관세율 적용)
 - 2017년 12월: CBSA 본판정 예정

2017 외국의 통상환경

- 무역장벽 보고서 -

◆ 인 쇄 | 2017년 12월

◆ 발 행 | 2017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주)나모기획 (044-998-6998)